

제418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0)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9)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2)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2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32.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3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3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 상정된 안건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 5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	5
3.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	5
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	5
5.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	5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	5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	5
8.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	5
9.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	5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2) .....	5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	5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	5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	5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	5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 .....	5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 .....	6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 .....	6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	6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0) .....	6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9) .....	6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2) .....	6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 .....	6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 .....	6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 .....	6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 .....	6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	6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6
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6
2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	6
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	6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6
32.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	6
3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	6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	6
3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	6

---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to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원이**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의사진행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제정안은 시간이, 많이 숙고할 필요가 있어 갖고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동진 위원** 이재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이 아무래도 제정안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뒷부분도 같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 관심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여야 간사님 합의에 의해서 순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합의에 의해서 맞습니다. 의견이 들어와서 의견을 묻는 거니까 반대하시면 원안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고동진 위원** 꼭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원래 의안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5.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8.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9.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62)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20)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16)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43)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23)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31)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1)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16)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3)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760)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89)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2)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6)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86)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60)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48)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6)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2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4)
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1)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3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3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
3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7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7건의 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발의 배경입니다.

7건의 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심화,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대응 필요성 그리고 기존 법률의 한계 측면에서 새로운 지원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7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특구를 지정하고 전력·용수 등의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며 연구개발·시설투자·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고 인허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공통으로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들이 있고 개별 법안별로는 중소기업의 지원 또는 수도권정비법의 특례, 수출 승인·신고 지원에 대한 특례,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표가 3쪽부터 7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법안명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키워드로 해 가지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총론에서 목적, 정의,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다른 입법례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통계 작성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와 지원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이 있고 그 이후에는 기반시설 또는 보조금의 지원,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세제나 예비타당성 면제나 우선 선정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조성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설치, 수출 승인 그다음에 보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특구에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할 때 적용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8쪽, 총칙의 제명 및 목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제명 및 목적, 7개 법안의 제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본 키워드로 해서 각 안별로 생태계 강화 및 지원 또는 발전 지원, 혁신성장 등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으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반도체 주권

확립,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명으로서 지금 특별법 또는 특별조치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9쪽에 제정안별로 요약해서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법안명과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무리되면 또 질의할 수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순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질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고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쪽의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의 법안이 유사하지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수정 의견을 준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법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적의 경우에 용어를 일부 재배치하고 수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목적 조항에 제시를 했습니다. 목적 조항을 제시하면서 고민한 부분은 다른 제정법안에 있는 주요한 키워드를 가장 많이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 이외에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수단과 그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구별을 해 가지고 표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를 수단으로써 이해를 하였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를 중간 단계의 목표로 이해를 했으며 그로 인한 효과로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쭉 듣고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제명과, 법안명과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철규 의원님이 얘기하신 안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듣기 편하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에서는 여기 수정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용어가 포함,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되어야 이 법이 앞으로 튼튼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의하는데, 반도체 주권을 확립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표현을 목적에 넣을지 말지는 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하실 때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으니까 필요할 경우 질문하시면, 참고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일단 최종 목적에서 국가·경제 안보를 집어넣는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WTO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경제 안보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은 우리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법안명에 대해서는 이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혁신성장 특별법 이렇게 길게 가기보다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이 경쟁력 강화에는 보호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지속성장이라든가 이러한 자구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박형수 위원** 정부 측에 한번 물어봅시다.

정부 측에 ‘혁신성장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법안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야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지원 조치들 중에 상당 부분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명에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박형수 위원** 아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어느 걸 해도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반도체가 전혀 기술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해외에서 다들 수입해 온다든지 이런 식이라면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는데, 반도체 일정 부분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주권을 확립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법안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주권을 확립하여’ 이런 표현이 들어간 법안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소부장의 자립도를 앞으로 높여 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들을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법의 목적 조항에 이렇게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을지 말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법명에 보면 특별법 또는 특별조치법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법과 특별조치법에 어떤 우선, 상하 그런 개념이 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재관 위원** 말씀드리는 게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첨단전략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차전지, 디스

플레이, 바이오 산업 등을 포괄하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법인데 나중에 반도체법과 그 다음에 기왕에 있는 특별조치법과의 그런 관계에 혹시 중복되는 또는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말씀 주신 대로 첨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첨단법의 하부구조로써 반도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특별법과 특별조치법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첨단법의 어떤, 또 다른 특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특별조치법보다는 특별법이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 이철규 안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상 같은 말이고 이 법안의 핵심적 취지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갖고 있는 게 핵심임을 감안해 보면 정진욱 의원님이 제안한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가는 게 전체 법안의 취지에 가장 맥락상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욱 의원님이 제안한, 사실은 다 같은 얘기기는 한데……

○**소위원장 김원이** 이게 앞으로 논의가 더 있을 예정입니다만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정부의 보조금, 정부의 직접지원이냐 간접지원이냐 이런 지원 방식 그다음에 근로시간 문제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즉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 ‘지원을 위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정진욱 위원님 의견, 김성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소위원장 김원이** 제명 가지고 큰 문제는 아닌데 정부 측은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일단은 제명을, 법안명을 정진욱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일단 1차 마무리를 하고요, 또 논의할 것 있으면 더 추가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목적에 대한 얘기는 어떤가요? 아까 박형수 위원님은 굳이 반도체 주권 확립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게 옳으냐, 다른 법안은 좀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동진 위원** 반도체 관련해서는 선진국이, 경쟁국 미국·일본·중국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형태들이, 그 사람들 법안에 주권 확립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반도체 주권을 확립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살려 놓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저도 적극적 의미를 갖는 것이 좋을 수 있어서 고동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성환 위원** 한번 써 보지요, 이것.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지금 수정의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1조 목적 조항은 이 내용을 살려 가는 걸로 할까요?

○김성환 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이렇게 살려 가시지요.

○고동진 위원 국가·경제 안보도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집어넣고.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제1조 목적은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 내용을 살려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의결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여기까지 그러면 제명과 목적까지 살폈고요. 다음 정의로 넘어갈까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쪽, 정의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내용에 따라서 사용되는 반도체산업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특구 등에 대해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반도체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면서도 관련성이 조금 약한 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안에서는 연대협력모델, 반도체공급망안정품목 등의 용어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심사 결과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 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7개의 제정안 모두 반도체산업과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반도체사업자라든지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연대협력모델, 반도체산업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안에서 정의 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별 내용은 반도체산업의 경우에도 13쪽에 안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박수영·이언주·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다’입니다. 다목에 보면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이렇게 돼 있고 이철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면 마에 ‘가부터 라까지 관련 시설을 제조·건설하는 산업’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철규 의원안 나목의 경우에도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공급하는 산업’, 일명 파운드리산업에 대해서 다른 법률안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특구 등에 대해서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수정의견 위주로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16쪽에서는 반도체산업 중에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공급하는 산업, 나목의 파운드리산업 규정은 이철규 의원안의 것을 반영했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영·이언주·정진욱 의원안이 제시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산업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마목에서도 그 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도 산자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특구에 대해서는 명칭을 우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도체 특구 내지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에 관련된 정의에서는 가장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19쪽에 있는 송석준 의원안에 있는 연대협력모델이라든지 20쪽에 있는 김태년 의원안의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은 정진우 의원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안에는 반도체산업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추후에 제정안 심사하시면서 이 사항들이 필요할 때 다시 돌아와서 정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특구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고동진 위원 정부안은 안 듣습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반도체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고동진 의원님 안이나 이철규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모리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정부 측 의견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정부 측 의견은 서류로는 제출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서류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음번에는 미리미리 좀 해서…… 보고 해야지 듣기만 해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서류 준비돼 있는 것 지금이라도 줄 수 있나요, 정부 측 의견 정리한 것?

그걸 다 듣고 어떻게 다 외워서 하겠어요? 정부 측 의견 있으면 자료를 미리 좀 깔아주시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원래 양식이 저희가 법안소위 심의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요?

○김성환 위원 아니, 보통 여기에 무슨 동의, 수용 곤란……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상임위는 보통 정부 측 의견 나오는데……

○김동아 위원 쟁점별로는 있어요.

○박지혜 위원 11페이지에 간략하게는 나와 있어요, 11페이지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의견이라고 해서, 11쪽 정의 부분 맨 오른쪽에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 부분에서 반도체산업과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중에서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있어서는 우선 메모리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산업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나 비메모리를 설계하고 또 관련된 소부장 이런 쪽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 관련된 연구개발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파운드리에 대한 지원 의지가 곳곳에, 뒤에 본문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공급하는 산업도 용어 정의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가·나·다·라는 약간의 자구 수정을 거쳐서 4개 정도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마 항목은 사실 팹을 건설하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항은 빼고 가·나·다·라 정도가 사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철규 의원안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다음은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클러스터, 특구, 메가클러스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반도체클러스터라고 규정을 해도 수용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일단 반도체산업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만든 안에 대해서 반도체산업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화단지로 정의한다’ 이 정도면 정부 측에서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런데 클러스터는 앞으로 어떻게 지정이 될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꼭 특화단지하고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에 있는 팹리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들도 클러스터로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화단지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고동진 위원** 그것 동의합니다.

○**김동아 위원** 저는 다른 관점인데 우리가 정의를 만드는 법 조항에 클러스터라는 영어를 넣는 게 과연 적합한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고유명사도 아니고 사회에서 통용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얘기하면서 법에 영어로 된 정의 규정을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다른 한글로 된 내용으로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클러스터하고 특구의 차이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클러스터가 더 광의의 개념 같습니다. 클러스터는 어떤

산업의 생태계가 직결돼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구는 그런 어떤 집결돼 있는 생태계 속에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클러스터를 대체할 만한 한국말은 없어요?

○**고동진 위원** 클러스터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써 왔기 때문에, 영어 문구가 법 조항에 들어가는 게 김동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아리까리한데 오랫동안 써 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전문위원님, 뭐 다른 표현 없을까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재관 위원** 집적지구.

○**소위원장 김원이** 집적지구……

○**서왕진 위원** 그런데 그 첨단산업법에 있는 특화단지하고 클러스터가 정말 다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서왕진 위원** 첨단산업법에 있는 특화단지, 거기 이미 특화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반도체 원래는 포함돼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것하고 클러스터라는 게 정말 개념적으로 다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느냐 또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첨단법에 주어진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지구를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전국에 12개 그다음에 이 반도체만 놓고 보면 용인하고 평택 이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지원해야 될 게 이렇게 팝이 있는 그런 지역만 지원할 게 아니고 팝리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다 같이 성장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클러스터로 다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화단지에서는 다 배제돼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철규 의원안으로 가면 아마 이런 논의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석위원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클러스터 이 용어가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찾아보면 법명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해서 환경부 소관 법률이 하나 있고요, 해수부에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일단 클러스터로 해 놓고요, 이 법안을 의결하는 시점에서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누군가가 제안해 주기로 하고요.

김동아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수용하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해서 일단은……

○**김동아 위원** 저는 다른 법도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전에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받아안되 대안을 좀 만들어 보고 일단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클러스터만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성환 위원** 클러스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포도송이랍니다, 포도.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법안을 반도체 포도송이……

○**고동진 위원** 그건 조금……

○**김성환 위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고동진 위원** 의미가 맞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일단 다른 의견 없으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고동진 위원님 말씀 주신 이철규 안을 기본으로 해서 정의 부분은 정리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철규 의원안 기준으로 마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마목을 제외하고……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에는 마목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 문제는 마목을 제외한 이철규 의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이 21쪽?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1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3조·4조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 등의 책무 관련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김태년·송석준 의원안 등의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자 또 반도체특구 내 입주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씩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별로 비교된 내용입니다.

우선 22쪽에 있는 내용은 책무에 주체별 차이가 있는 점을 드러내서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송석준 의원안은 국가의 책무만을, 그다음에 그 외 여러 의원님들은 국가 및 지자체, 그다음에 김태년·송석준 의원안은 추가로 반도체 사업자에 대해서 또 김태년 의원안은 반도체특구 입주기업체 사용주·근로자에 대해서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은 표현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비교를 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유사하지만 조금 씩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24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 관련돼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실무 수정의견으로서도 1항에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노력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목적 조항과 관련이 있는데 목적 조항을 앞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김태년 의원안의 반도체 사업자의 책무, 반도체특구 입주 기업체 사용주와 근로자의 책무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안에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대한 이런 책무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제정안들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실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키워드는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정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책무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 법안의 이름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원에 관한 그런 특별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책무의 주체로서 국가와 지자체로 정의하는 계적절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일단 첨단법하고 동일하게 국가하고 지자체 책무만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안으로 가져가는 게 옳다라고 하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저는 첨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을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특별한 지원을 받는 사업자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실 김태년 의원안의 3조 3항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가 특별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4항까지는 아니더라도 3항 정도는 넣어 주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지혜 위원님 의견……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지금 그냥 반도체 특별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 지금 주요한 반도체산업들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뒤에 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특히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 사실상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들이 반도체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국회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면 반도체 기업에서 더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서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있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 하자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 반도체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합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이 가능한 것은? 그렇다면 반도체사업자가 경영,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을 3항에 넣음으로써 이 특별법이 단지 기반시설 만들어 주고 보조금 주고 끝나는 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뭐라 할까요 사업자에 대한 자극이랄까요, 너지(nudge) 같은 것을 하나 넣어 놓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박지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박지혜 위원님하고 정진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어떤 반도체사업자라든가 특구 입주업체 사용주·근로자에 대한 어떤 책무 이런 조항을 넣는 것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보는데 수석전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3항에 반도체사업자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는 반영을 하는 것도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고동진 위원** 3항 정도, 3항.

○**서일준 위원** 3항까지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이것은 사실 사족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굳이, 법률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적절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4항은 빼고 3항을 집어넣는 정도로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 지금 논의할 게 많으니까 고동진 위원님 하여간……

○**고동진 위원** 3항까지.

○**소위원장 김원이** 예, 3항까지. 박지혜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동의까지 포함해서 3항을 살려 가는 방향으로, 정부 측도 동의했으니까요,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27쪽입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통계 작성 등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반도체특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게 대부분의 안에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정책 기본방향, 발전전망,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하고 있고, 김태년·이언주·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명칭, 목적 등은 법률의 제명을 따라서 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관련해서 산자부장관뿐만 아니라 과기부도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8쪽, 제정안별로 비교해서 다른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이나 목적, 내용의 공통사항까지는 유사한 내용들로 대동소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특이사항으로는 각 의원안별로, 각 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회 상임위 보고, 자료제출 요청에 있어서 일부 반영을 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9쪽, 실행계획 또는 시행계획 관련입니다.

실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고 반도체특위 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조사·발전전망·통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안들이 모두 규정하고 있고 필요 한 것으로 보입니다.

30쪽의 제정안별 비교표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과 주체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다른 안들은 모두 반도체특위 보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언주 의원안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황조사, 발전전망, 통계 작성 등과 관련한 조항도 대부분은 포함이 되는데 김태년 의원안과 정진욱 의원안은 통계 작성만을 한 경우도 있고 이철규 의원안은 현황조사, 발전전망만을 포함하는 경우, 이언주 의원안은 관련 조항이 없는, 이렇게 일부씩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1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린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1쪽의 5조 1항에 있는 명칭에 대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으로 대부분의 의원안이 유사하지만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아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서 2호에 있는 전력망·용수망·도로망으로 수정의 견을 제시하였는데, 전력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안은 거기에 용수를 추가하였고 이철규 의원안은 전력망·용수망에 다시 도로까지 추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전력망·용수망·도로망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쪽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에 반영이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반영은 하였습니다. 우선은 반영을 하였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사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것을 포함할지 빼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6쪽에 있는 수정의견 5항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김태년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정진욱 의원안처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가급적이면 의원안들에 있는 것을 반영을 하였고 그중에서 포함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기본계획의 명칭,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자구 수정은 조금 필요해 보이지만 대체로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세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조특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관련해서는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각 부처의 부문 계획을 종합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상임위 보고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설명대로 지금 유사 입법례를 확인을 해 봤는데 이렇게 기본계획 같은 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든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 3건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 보고 조항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제정안별 비교 기본계획 수립 관련 표에서 제 부분이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엑스 표로 돼 있네요. 그리고 그다음 30페이지에서도 국회 상임위에 보고인데 ‘반도체특위에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잘못돼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자료 작성에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8쪽에 있는 비교표에서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반도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또 우리 산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등락에 하루하루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반도체위원회의 구성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반도체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그냥 정부 부처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전문가, 민간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내지는 우리 국민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법안이고 또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법안 중에서 저를 포함한 다수가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보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차관님, 아까 기본계획 단계에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례가 뭐가 있다고 그랬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전력수급기본계획하고 또 지방시대종합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기본계획, 이 세 가지입니다.

○**박형수 위원** 기본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통제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계획 단계부터 국회에 보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른 법체계와 정합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다만 정진욱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으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계획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세에 지장이 없는 얘기인데 이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 아니고 보고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확정하고 보도자료 내는 것하고 정부가 확정한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하니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반도체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시고 조문은 살려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질문.

이 보고가 전기본도 보고로 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국회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안 하면 그 전기본이 진행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것은……

○**고동진 위원** 일단은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다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한테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국회에다 보고하는 정도는

수용을 하고 아까 우리 수석께서 이야기한 계획상의 전력망·용수망 이건 구체적으로 다 반영을 하고.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도로망도.

○**고동진 위원** 도로망까지. 그다음에 세제 지원은 정부 의견을 수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그것은 논의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고동진 위원** 예, 지금 그것은 크게 논의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그려면 정부 측……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또 실행계획도 보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실행 계획은 그 기본계획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반드시 체특위 내에서 보고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원이** 어떻습니까?

○**고동진 위원** 이것은 정부안을 받아들여요.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의 틀 안에 포함된 실행계획이라 사실은 그것까지 보고하는 것은 이중적 일 것 같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정부 측이 기본계획에서 보고하는, 기본계획 수립 후 보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고동진 위원** 예.

○**박형수 위원** 일응은 그렇게 해 놓고 생각 좀 더 해 볼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일단은……

○**박지혜 위원** 세제 지원은 지금 어쨌든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실 때 재정으로 뭔가 조금 용어를 변경해 가지고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정의견에는 세제라는 말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산업기반시설의 정의가 이 법에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뒤쪽에 나옵니다.

○**박지혜 위원** 뒤에 산업기반시설의 정의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박지혜 위원** 그 정의에 따르면 산업기반시설이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것도 앞으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현재는 전력·용수·도로·기타 이렇게 그런 틀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재생에너지를 넣어 주신 분도 있고 그건 앞으로 좀 논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력망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게 송전선로망 산업 기반시설로 간주하는 것인지…… 지금 사실 이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에너지원을

어떻게 새로 만들고 공급하는 체계를 짜 가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걸로 족한 건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데요. 뒤에 또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고동진 위원** 일단은 전력망으로 해 놓으시고 가져가는 게……

○**박지혜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왜냐하면 이게 또 반도체산업 관련한 거니까 일반 산업까지 포함…… 재생에너지 문제나 이런 건 조금 더 논의해 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를 보시면 80쪽 뒤쪽에 가면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호로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지금 갈 길이 맍니다. 겁나게 두껍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전문위원님들이 정리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3쪽입니다.

위원회 및 지원조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도체산업 주요 정책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명칭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행정조직으로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면서 20인 또는 30인으로 하고 하부에 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44쪽에 보시면 이철규 의원안은 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산자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쪽에 비교표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44쪽에 있는 부처의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와 행안부에서는 현재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와 기능상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과기부에서는 과기부장관과 차관이 반도체위원회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추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5쪽, 제정안별 비교를 보시면 명칭에 있어서는 유사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또는 반도체산업발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대부분 20명인데 30명으로 한 이언주 의원안이 있고 김태년 의원안과 정진욱 의원안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또 정진욱 의원안은 거기에 국회 추천 2인 이상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5쪽 밑에 보시는 의결 결과의 통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안과 정진욱 의원안의 자체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를 규정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철규 의원안은 지원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하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분야별 전문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두고 있습니다. 심의·의결 사항은 공통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각 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특이사항들로 세제 지원을 한다든가 중장기 전망, 국가 비전 수립 등등의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47쪽부터 61쪽까지 조문대비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각 제정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호에 보시는 전력망·용수망·도로망은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기본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제정안 각 안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2쪽입니다.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하부조직 등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실무 수정의견으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다만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포함하는 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이철규 의원안에 있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우선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반도체특위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예상하고 있는 정부 부처 등 관계자들이 한 10여 명 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포함해서 20여 명 이내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 국회 추천 2명을 포함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참여라든지 역할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558개 행정위원회를 조사해 보면 18개 위원회에 국회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 18개 위원회들이 대부분은 뭔가 공정하고 투명성이 중요되거나 또는 사회적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로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심의·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견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심의·의결기구들을 조사를 해 보니 그 결과 통보를 지자체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나 관계 기관이 알아야 될 부분은 개별적으로 당연히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특위를 지원하고 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집행하는 그런 실무기구로서 소부장 실무추진단을 소부장법에서 규정해서 지금 산업부에 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처럼 반도체혁신성장추진단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총리 소속으로 현재 있고 위원장은 누구지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국무총리십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체계상으로도 그렇고 굳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보통 제삼의 기관에서 제삼자적인 시각으로 보면 위원회의 격을 높여서 그 업무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있는데 실상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 또 실제로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는 굳이 이렇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할 사항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조직에 대해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의 조직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법에서는 지원조직을 둔다라는 정도의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명칭부터 좀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동진 위원** 일단 이재관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물론 대통령이 항상 주관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거 관련된 법이 산자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여러 부처에 의해 가지고 걸쳐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운영이라든가 이거를 대통령 직속의 조직으로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놓고 그 산하에 실제 움직이는 거는 산자부가 그걸 위임받아서 움직이는 걸로 해 놓은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가져가는 거는 반도체산업의 빠른 움직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방금 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행계획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일관된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 취지가 국회 동의가 민간위원을 추천하자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어떤 분을 추천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회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면 아마 민간 전문가를 추천하는 걸……

○**정진욱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좀 말씀드려 볼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말씀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회의 기준에 봤던 공정성, 투명성, 사회적 갈등, 이런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명 중에서 민간위원 10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어느 한쪽이 불편한 사람은 딱 1명입니다, 1명. 그러니까 A라는 정부가 있으면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제일 큰 당 두 당이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19명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1명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그리고 또 그분의 존재가 사업의 속도를 방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의 계획이라든가 또는 실행에는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 기본계획에는 보고만 있지 어떤 사후 승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법안을 내놨는데요. 물론 이 반도체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무슨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행정개혁이고 또 굉장히 어떤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요. 그래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건 저는 전혀 다른 논의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논의를 풍성하게 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회에 그 정부가 불편한 한 사람 때문에 2명의 추천을 반대한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꼭 2명의 국회 추천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 정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의미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모든 행정이나 또는 국가가 추진하는 것에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런 위원회나 또는 정부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명성이 요구되거나 다양한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확대하면 모든 정부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국회가 추천하는 절차가 지금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장점도 있겠지만 효율성을 해치는 이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법체계상 정합성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특별히 이게 들어간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비근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첨단산업경쟁력강화 거기도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위원회일 수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여기만 들어간다는 게 조금 또 이상한 것 같고.

그 연장선상으로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상위 개념인 것 같은데, 첨단산업 중에서 반도체만 특별히 더 빼 가지고 이런 더 중요하니까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거기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여기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법체계의 정합성은 좀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걸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한다면 첨단산업경쟁력 거기의 위원장도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걸 수정하지 않는다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것도 국무총리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욱 위원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새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성·투명성이나 이런 게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요. 어딘가에 법조문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을 보면서 법적 정합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첨단산업법하고 반도체법이 충돌하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박형수 위원 특별법이, 반도체가 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진욱 위원 그렇지요. 첨단산업법이 상위법이 아닙니다. 법적 정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박형수 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기본법이라는 취지입니다, 기본법.

○정진욱 위원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 굉장히 사회적 저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아마 우리는 지금 바이오법이나 이런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법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서 저는 사회적합의를 이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안을 내면서 전폭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두 사람의 존재가 과연 그걸 해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당이 추천할 때 그 사람이 갖는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검증되고 감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일단 어떤가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일단 첨단산업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이 원체 중대한 사안이고 목적에도 나오다시피 국가안보라든지 경제 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다소 파격적인 그런 특별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이걸 첨단법하고…… 첨단법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건 더 낮거나 동급이어야 된다 이거는 다소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행정위원회 중에서 한 18개 정도가 이렇

게 국회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걸 좀 분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추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법들 외에도 수많은 법들이 사실은 국회 추천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왜 굳이 국회 추천을 받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그 위원회에서 반영을 했어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한번 좀 더 토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진욱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지금 18개 위원회 내용들을 분석한다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이면 관례대로 한다면 특별법을,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김동아 위원 저는 과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정 산업 지원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지금 당장은 시급성이 있다손 치지만 이게 1년, 2년짜리 법도 아닌데 대통령이 굳이 위원장이 되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또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여야를 떠나서 산업이 또 정치 쟁점화될 소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 위원회 가서 어떤 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 발언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그 부분이 또 분명한 정치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과연 맞을까, 좀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0월 챗GPT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할 만큼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알파고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소위 AI 인공지능 시대가 모든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고 그 인공지능의 핵심이 반도체여서 이게 다른 산업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지금 시기라면 이 일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지금은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미국도 괜히 칩스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만큼 나중에 또 다른 시대가 와서 ‘아이고, 대통령이 꼭 해야 돼?’ 그러면 그때 가서 국무총리로 낯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진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회 추천 2인 문제는 오늘 다른 쟁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쟁점으로 남겨 놓고 나중에 결정하면……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 좀 한번 깔아 주세요.

참고로 산자위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다섯 군데가 있네요, 산자위만. 전 정부에서 18개라는 건가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그중에 산자위 추천 민간위원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이것도 국회 추천 4인이고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이것도 국회 추천 2인이고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2명, 해외자산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2명, 통상교섭민자문위원회에 국회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산자위만 해도 한 5개 정도의 국회 추천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명칭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명칭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대통령이냐 총리냐, 국회 추천……

○**김성환 위원** 반도체특별위원회는 간단하게……

○**소위원장 김원이** 그리고 자체 통보 문제도 의견 안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자체에 통보하는 것을 반대하신 거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까지 하는 형태대로 하자 이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보통 고시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고시가 없고요. 심의·의결을 하면 일단 끝나는데 이 법에서는 심의·의결 결과를 각 자체에 통보를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심의·의결 기구들의 법규를 보니까 이렇게 규정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은 자체 통보까지 의무화해 두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지금 네 가지입니다. 명칭은 좀 간단하게 가자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어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철규 의원님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대체적으로 이언주 의원님도 같은 얘기고 앞에 정진욱 의원님은 ‘국가’가 하나 더 붙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언주 의원님이나 이철규 의원님이나 고동진 의원님도 사실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고동진 위원** 명칭은 동일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앞에 ‘특별’을 넣느냐 마느냐네요.

○**고동진 위원** 앞의 ‘특별’ 자를 사실 빼도 되고 특별위원회 해도 되고.

○**김성환 위원** 특별위원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특별위원회 하시지요. 특별한 법이니까, 특별법이니까 특별위원회로 하시지요.

그러면 고동진 의원님 안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거든요, 이언주 의원님 안하고. 이렇게 가시지요. 아, 여기 ‘산업’이 빠졌구나. 그냥 ‘산업’ 넣어 가지고 고동진 의원님 안으로 명칭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고.

대통령 직속으로 할 거냐 이것은 김성환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이런 분들은 대통령 직속이 맞겠다 이런 거고요. 정진욱 위원님도 그런 취지였지요. 그다음에 이재관 위원님이나 박형수 위원님이 약간 그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서왕진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서왕진 위원** 저도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결단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위원회로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야기할 때 기업의 책임성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의구심,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될 텐데 그게 너무 불균형하거나 또는 균형발전이나 노동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

하게 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도 국회에서 한 두 사람 정도 추천한다 이런 정도면 저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리고 지자체 통보는 그냥 빼는 것으로 하고요.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고동진 의원님 안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위원이 다수고요. 그다음에 국회 추천은 가능한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이 법안의 취지가 워낙 특별한 만큼 그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뭐가 조금 더 많아.

○**소위원장 김원이** 민주당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리고 서왕진 위원님도 그렇고.

○**박형수 위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하여간 다수를……

○**허성무 위원** 표결로 하지.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서 표결하거나 이러지는 말고. 지금 여기서 힘 빼면 안 돼요, 뒤에 논쟁거리가 되게 많아요.

○**김성환 위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추천하는 것이어서……

○**소위원장 김원이** 여야 1명씩 추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환 위원** 추천하면 거기 가서 무슨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리고 이미 산자위에서 정부 심의위원회에 민간 추천하는 게 다섯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박형수 위원** 아니, 다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동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 위원회에 가서 한 분이 계속해서, 사람 생각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를, 실제로 우리도 얼마 전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고동진 위원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신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산업 부문을 폐지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대통령이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정쟁화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국무총리나 또는 이렇게 낫추는 방법 그다음에 또 국회 추천하는 게 들어가면 그럴 소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쟁력을 위해서 모두가 지금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성격상 이것은 그런 국회 추천이 맞는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명칭을 이렇게 하시지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은 위원회니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거수기특별위원회라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이고, 정진욱 위원님, 그렇게……

○**박형수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원이** 하여간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아니, 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니까?

○**박형수 위원**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진욱 위원** 그러면 위원회 만들지 않아야지요.

○**박형수 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진욱 위원** 이것 뭐 하려고 반도체 특별법 만들니까?

○**박형수 위원** 발언을 하면 그 취지를 잘 들으셔야지 꼭 그렇게 곤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진욱 위원** 아니, 위원회를 뭐 하려고 만드냐고요. 아니,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면 위원회를 뭐 하려고 만드냐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고동진 위원님이 말을……

○**김성환 위원** 이것 쟁점으로 남겨 놓고 나중에 숙의해서 처리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하기보다는 지금 하나……

○**김성환 위원** 아니, 다른 사안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고동진 위원** 명확히 하자면 아까 이렇게 대통령 중심 산하 위원회로 가져가시는 그 말씀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서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삼성이나 대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은 그 뒤에 가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 그게 만약에 초점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와도 되고 오직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경쟁력을 하는 차원으로 이 법을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정진욱 위원** 저는 전적으로 그런 입장에 서 있고요. 지금 논의를 하면서 자꾸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는데 무슨 딴지를 걸겠다라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논의하면서 자꾸 그런 방식으로 규정해 가는데 제 의도와 전혀 다르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서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하여간 이것 명칭은 정리됐고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추천 몇 2명을 할 것이냐는 박형수 위원님이나 동의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시지요.

○**서일준 위원** 아니요, 쟁점으로 남겨 두고 나중에……

○**소위원장 김원이** 쟁점으로 남겨 놓을까요?

○**서일준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일단 놔두고 지자체 통보는 빼는 것으로 하고요.

○**김동아 위원** 저는 대통령도 쟁점으로 남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오늘 법안의 취지를 보면 위원장은 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으로 한다’가 박수영 의원님 안 빼고는 거의 모든 의원님이 다 그렇게 해 와서 그런 취지는 살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까지도 쟁점으로 두면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 추천 몇은 남겨 두고 넘어갈

까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다음에 특구 지정 문제인가요, 6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2쪽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원정책, 인허가, 협약 등 특례에 관련된 사항 중에 먼저 반도체클러스터의 특구 지정입니다.

아까 명칭을 반도체클러스터로 우선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육성시책, 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보면 안별로 지정 주체나 신청 주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63쪽입니다.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은 반도체클러스터 관리 위탁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특구의 육성시책은 정부가 수립하고 이것을 반도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4쪽의 비교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 주체와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을 지정 주체로 하는 안이 두 안이 있고 정부로 표현을 한 안이 두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주체의 경우에는 반도체산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는 경우 내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안과 정진욱 의원안에서는 그 관련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에서 반도체특위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 절차에 관련해서는 이철규 의원안에서 산업입지법이나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5쪽부터의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먼저 실무 수정의견으로는 명칭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지정해 주신대로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7쪽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절차 규정을 반영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자세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68쪽입니다.

반도체산업클러스터 사업 시행 신청에 필요한 계획 내용이나 규정들을 우선 김태년 의원안,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클러스터 지정 시 심사 요건에 대해서도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장 세부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반영을 했으니 심사하셔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근거 규정이 고동진 의원안 등 4건의 안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가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 뒤에 같이 논의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72쪽 밑의 부분에 있는 관리위탁규정을 반영하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하는 것은 위탁규정만 우선은 반영을 하였고 법에서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선은 근거 규정만 두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쪽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입니다.

이때 반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거치는 것으로 안을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75쪽에는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5호에 수정의견으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특허청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영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5쪽 맨 마지막부터 76쪽까지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수립이나 변경 시에 관계 부처나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76쪽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대해서도 우선 쪽 해서 79쪽까지 반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정 해제에 추가해서 변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김태년 의원안과 정진욱 의원안에 있습니다. 그 사안을 반영할 것인지는 논의해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79쪽에 보시면, 우선은 변경 또는 해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논의해서 변경 여부를 반영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대체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 내용과 관련해서 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할 때, 여기 정진욱 의원님이나 김태년 의원님 안에 보면 신청서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아주 소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법안을 냈을 때는 클러스터 신청 지정 자체를 기업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정부 의견대로, 산업부장관을 지정 주체로 하고 신청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는 정부안을 보니까 이 방법이 옳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구 지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김성환 위원** 이 특구를 현재로서 확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

면 그 기본 단위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시도가 되는지 광역 단위가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서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클러스터에 대해 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어떤 지자체 행정구역하고 반드시 일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지자체, 예를 들어서 첨단특화단지 같으면 여러 기초지자체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클러스터를 기준의 특화단지의 범주와 맞춰서 지정을 할지, 아까 예를 제가 들어 드린 것처럼 판교 같으면 팹리스들 또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결집된 곳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요소요소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요소요소 지정을 클러스터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련된 많은 업계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걸 지금처럼 초광역으로 하나의 클러스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군데군데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은 아까 국회 추천이 필요하나 마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어떤 지원 조치들과 이 특별법에서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다 정해 놓으면 이게 어떤 쪽의 위원회들이 활동을 할 것이고 또 여기 클러스터가 어떤 규모로 설정이 되겠구나라는 게, 아마 오늘 토의를 다 끝내 보면 저희도 그런 게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아직은 논의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아 위원** 판교 그런 데 지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표현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클러스터라고 하면 용인이나 이런 데 대규모 단지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메가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구분하신 위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판교에 있는 소규모를 클러스터로 지정해서 거기에 용수니 뛰니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는 취지와 맞는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동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판교에 메인이 팹리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용수나 소위 도로, 전력 이거하고는……

○**김동아 위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동진 위원** 예. 별로 관계가 없어요.

○**김동아 위원** 정의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메가클러스터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나면 이게 초광역, 광역과 광역을 서로 연결하는 정도의 클러스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라서 그냥 클러스터 정도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법을 검토하면서 이런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법을 하면서 대부분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관시켜서 그 지원을 위한 근거 법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법이 취지상으로 이 조항에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산업부장관이 국토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반도체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경쟁 체제를 놓고, 지역균형발전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고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정의에서 나왔으니 반도체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가미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지금 대체적으로 고동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고동진 위원** 저는 정부안에……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안에 동의하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진행을 정부안에 대해 쭉 설명, 그걸 하나씩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위원들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정부안대로 정리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지요?

○**서왕진 위원** 그런데 정부안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62페이지.

○**김동아 위원** 기재부나 이런 건 다른 의견이던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하나요, 토론?

○**소위원장 김원이** 기재부 의견은 여기에 따로 없는데요.

아, 기재부 의견은 유사하므로…… 63페이지에 있네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일관되고 내실 있게 지원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주장이어서 기재부의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네요.

○**김동아 위원** 합리적인 의견 같은데.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아예 그냥 반도체 특별법을 통으로 반대해야 되는데.

○**박형수 위원** 기재부 의견이 어디 있다고……

○**소위원장 김원이** 63페이지 중간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고동진 위원**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중간쯤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도체 특구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특화단지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일관되고 내실 있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여서 사실은 지금 이 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이네요.

○**박형수 위원** 생뚱맞은 의견을 내놨어.

○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최초에 이 법이 제안되었을 때 아마 기재부 내부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됐던 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소위원장 김원이 최근?

○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지금은 1차관 말씀 주신 기본적인 정부안에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요? 그러면 전작 얘기하시지.

기재부 의견도 정부 의견에 동의한답니다.

○ 고동진 위원 저는 정부안에 일단 동의는 하는데, 수석한테 하나 질문이 있어요.

김태년 의원님 안에 태양광 설비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게 수정안으로 들어갑니까?

아까 우리가 전력 그다음에 용수, 도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력에 포함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제가 초안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안 중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1차관이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할 때 사업 시행 신청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달라고 했습니다.

○ 고동진 위원 위임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법에서 명시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달라고 했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도 되겠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없지요?

그러면 이 조항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의 수정안을 반영해서 조문을 작성하는 걸로 하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항은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2항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조항을, 문안은 그렇지만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 소위원장 김원이 이 조항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 이재관 위원 이것을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 소위원장 김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68페이지 보면 ‘국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는 부족한가요?

○ 이재관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내용인가요?

○ 이재관 위원 그건 다른 얘기지요.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까요?

○ 정진욱 위원 찾아보시는 동안에 제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안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기존 안이 경제자유구역하고 김태년 의원님 안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추가한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회 발전특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곳곳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있을 텐데요. 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게 되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 이렇게 지역들을 좀 폭넓게 함으로써…… 반도체 특별법이 수도권에 이미 집중되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도체클러스터가 다른, 이른바 평택을 남방한계선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지역에도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한 규정을 이재관 위원님 말씀처럼 넣어 놓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의견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정의 규정에 말씀 주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령 위임하는 지역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정의견이 특별하게 여기 규정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아까 정의 조항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단지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가 그렇게……

○**소위원장 김원이** 기회발전특구도 들어갔던가요,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법안에서 그걸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대통령령에 그걸 넣겠다는 말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게 표현하실 거면 정의 조항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하고 정의 조항하고 중복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요, 다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관 위원** 정의 규정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김성환 위원** 정의 규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소위원장 김원이** 의지 표현 차원에서.

○**이재관 위원**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정도.

○**소위원장 김원이** 노력하여야…… 그러면 어느 조항으로 넣을까?

○**김성환 위원** 어디에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고민해서 넣어 보시지요, 상징적으로라도.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님, 어느 조항에다가 이재관 위원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

용을……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니까요.

○고동진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원장 김원이 노력하여야 한다. 어떤가요?

○김성환 위원 특히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당신 거기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박형수 위원 표현을 ‘노력한다’ 이렇게 하세요, 노력한다.

○정진욱 위원 19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에서 2항을 조금 더 바꿔서 넣으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어디, 2항?

○정진욱 위원 수정의견에 보면 2항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7페이지입니다.

○정진욱 위원 65페이지에서 수정의견 19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항에 보면 지역과 관련된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넣어 놓으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19조 2항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도체클러스터는, 여기서 지정하는 클러스터는 이게 개발사업이 아니거든요. 클러스터로 지정해서 거기의 땅을 수용해서 경자구역처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권역만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항은 지금 의미가 뭐냐하면 이렇게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국가산단 같은 걸 해야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여기 넣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항 하나 넣지요, 그럼 뭐.

○이재관 위원 1항에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5항 합시다, 5항.

○이재관 위원 1항에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김동아 위원 4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소위원장 김원이 5항에 넣읍시다. 5항을 하나 신규 문구를 만들어서 좀 이따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항을 만들고 현행 5항을 6항으로 해 가지고 그 취지를 문언을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6항, 그러니까 5항을 6항으로 늦추고 5항을 새로 신설하는 조항으로 해서 조금 이따 그 안은 문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차관님이 답변하실 때 클러스터를 지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있는 시설들을 하나로 묶는 의미라고 하셨고 거기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산단 같은 게 시설이 필요하면 따로 산단 지정을 요청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클러스터와 관련한 내용들이 특정 지역을 구획화해 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걸 전제로 조항들이 구성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걸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해 주신 이 반도체 특별법은 클러스터라는 것은 기존의 첨단 산업단지 도 있고 아까 정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회발전특구도 있고 여러 지역들이 어떤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도 용인 일반산단은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또 국가산단은 국가산단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관련 인프라 시설들도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 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하게 기업들이 밀집된 그런 구획을 정해 놓으면 그걸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관련 절차에 따라 지정이 되고 나면 그 클러스터에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게 인프라가 됐든 연구개발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박지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법 내용 속에 보면 문장들이 마치 클러스터를 개발한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표현들을 나중에 자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걸러 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또 뭐 추가로, 박지혜 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추가 논의는 계속 이어 가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지원정책, 인허가 및…… 이것은 넘어갑니다.

아까 19조 5항이었나요, 신설? 그렇게 조문 만들어서 좀 이따 보고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지요.

○**고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 12시 되었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어떡할까요, 지금 밥 먹고 할까요 아니면……

○**서일준 위원** 밥 먹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려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0쪽입니다.

반도체특구등에 대한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대해서 국가·지자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법안마다 규정하고 있는 대상하고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각 제정안의 부칙에서 적용례를 통해서 이 법 시행 당시에 설치 중인 기반시설 또 설치가 완료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좀 차이가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81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부의 경우에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의무 지원보다는 재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에 국가·지자체가 기반시설 등의 내용에 따라서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 반도체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은 필요한데 지자체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3쪽에 제정안별로 산업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는 법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력·용수, 폐수 처리, 폐기물, 도로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담고 있고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 등이 추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 부담을 국가·지자체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부칙의 적용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84쪽부터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 84쪽에 있는 수정의견 20조 1항의 맨 하단에 보시면 비용 부담을 국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또는 ‘부담할 수 있다’로 해서 의무 사항으로 할 것인지 재량 사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비용 지원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모든 개정안의 내용을 담았는데 대부분은 동일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2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그다음 6호에 있는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4호에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데 폐기물이 실무적으로 실수로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부칙에서 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설치가 완료된 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안은 포함을 하고 일부 안이 포함을 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포함된 것으로 우선 넓게 해 가지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설치 주체와 관련해서는 한전이나 수자원공사와 같이 기반시설 설치를 주된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설치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지원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많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지금 현재의 첨단법보다도 좀 약한 규정입니다. 첨단법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도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의무규정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일부’를 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는 규정을 넣어서 정부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전력·용수·폐수·도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인프라 지원의 대표적인 인프라를 이 네 가지를 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 신·재생, 공동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또 추가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건설 중인 기반시설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건설 중인 것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 설치된 기반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우선 박 차관님, 정부 쪽에서는 전력·용수·폐수·진입도로에 대해서 의무 조항으로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고동진 위원** 그렇지요. 81페이지에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의무 조항으로 했고 정부도 그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력·용수·폐수·도로 이거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SK하이닉스하고 미팅을 해 보니까 그쪽이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데 전력·용수·폐수·진입도로 관련해서 5조 4000억이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은 사실 한 790억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수석 의견도 이미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 완료된 것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해 세수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의무조항으

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우선 지원한다’ 이 정도 표현이 들어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1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문구의 의미가 뭔가요? 비용은 안 내면서 산업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조성한다는 게…… 이미 첨단산업 지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셨는데 저의 의미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의 의미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 문제도 있지만, 뒤에도 나오겠지만 각종 인허가 관련된 그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서왕진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기반시설의 조성·운영 지원인데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 부분은 아까 의견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뒷부분에서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소위원장 김원이** 이거는 그러면 남겨 둡시다, 확정하지 말고.

○**고동진 위원** 인프라에 대한 것으로……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지요.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규정은 나중에 보조금 얘기할 때 한꺼번에 같이 논의할까요, 여기서 하지 말고?

○**서왕진 위원** 뒤에 별도로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김동아 위원**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단을 개발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분양 수익을 그 사업자가 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김동아 위원**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얻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 입지를 이렇게, 인프라나 이걸 만약에 대폭 많이 지원하면 그 이익이 어떻게 보면 일반산단 사업시행자가 분양 수익으로 얻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나 의견이 있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게 일반산단이 되었던 산업단지든 아니든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프라가 필요한 어떤 집적지구인 경우에 그 인프라라는 것은,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프라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해 왔던 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련 법에 있어 가지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감면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원래는 개발이익 중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감면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인프라 지원이 다른 어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김동아 위원** 저희가 클러스터 이것을 지원하는 게 본연의 인프라,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인프라보다 더 해서 좀 더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시행자의 개발 이익으로만 들어간다면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환수할지도 진지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인에 뭐가 있다 그러면 용인에 국가산단, 일반 산단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유와 명분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면 거기에는 삼성이나 SK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깔리는 송전선로나 용수관로 시설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분양할 때…… 여기도 예를 들어 특화단지니까 단지의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화단지니까 산업단지 같은 모양을. 클러스터에 그것 다 포함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양가에 이런 시설비가 다 포함돼 버리면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은 이 클러스터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는 LH나 이런 데서 산단을 조성하면서 관련 인프라가 같이 깔리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낮춰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그런 비용, 예를 들어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을 여기에 전가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SK가 들어가 있는 곳은 일반산단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일반산단입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시행자는 SK인 거고?

○**김동아 위원** SK 지분이 많지요, 개발사예.

○**소위원장 김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건가?

○**김동아 위원** 예, 지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아마 SK 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 문제는 하여간……

    기재부 나와 있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

○**소위원장 김원이** 기재부 의견은 어때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도로, 용수시설 그다음에 폐수 그다음에 전기 이게 제

일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삼성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국도 45호선이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전해서 확장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아까 차관이 얘기하신 대로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법이 없더라도 원래는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100%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 국가산단 조성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인허가라든지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 줘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른 국가산단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속도감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을 보다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것 조성할 때 이 조항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참고로 아까 첨특단지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도 딱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보조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보조금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게 보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가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조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 1항……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산단을 개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입지법이나 그런 법령에 따라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얼마를 부담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한전과 같은 공기업들은 어느 부분까지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둘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첨단특화단지, 첨단법에 따른 특화단지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특별법에서는 그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 우리가 기존의 산단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좀 기울어져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낸 수정의견 20조 1항은 사실 큰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고, 그렇지요? 1항은 아까 이미 논의가 대충 정리가 됐고, 2항의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후에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논의하자고는 했는데 이 취지가 무엇인지를 물은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동진 위원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네 가지, 도로라든가 인프라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부안이 얘기가 된 거고.

○소위원장 김원이 그게 1항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다음에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아들인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이것이 되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빼도 되는 겁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박지혜 위원** 혹시나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해 주자, 더 적극적인 의미로 넣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때 원래는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지원하자는 의미로 넣은 건 아닌가요, 2항은? 그건 아니에요?

○**고동진 위원** 그건 아니고 김태년 의원님 안이 기존에 해 놓은 것도 일부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자라고 하는 의미였었지요, 아까.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은 이철규 의원안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지요, 지금 86페이지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아까 1항은 시설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일반적인 얘기니까 별 의견 없이 넘어왔어요. 그다음에 2항 문제인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철규 의원안을 받아 낸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금의 의미가 뭐고 어떤 식으로 지원된다는 건지 지금 상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시설 지어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이라고 하지 그걸 보조금이라고 안 그려잖아요. 여기서 표현하는 보조금이 어떤 의미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1항·2항을 통틀어서 이게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자는 개념인데, 지원해 주자는 개념인데 2항에 있는 ‘보조금 등’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없어도 되는 그런……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다른 일반 법률에서 규정할 때는 그냥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시설에 대해 그게 수공이 됐으면 저희가 출자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국도면 100% 국가가 다 시행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철규 의원안을 받은 전문위원님, 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 대충 정리하고 넘어가게요.

○**이재관 위원** 차관님, 지금 나름대로 단지별 지원상한액을 설정하는 게 좀 있나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단지별로요?

○**이재관 위원** 예, 단지별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은 첨단법에 따른 특화단지는 산업부 고시를 만들어서 지원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얼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지역별로 다 다른데요.

○ 소위원장 김원이 하여간 전문위원님, 이것 빨리 정리 좀 합시다.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제가 1항에 대해서 먼저……

○ 고동진 위원 박 수석께서 이철규 의원님의 보조금 이 내용을 빼면 모든 오해가 클리어한 것 아니예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84쪽에 있는 20조 1항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차관님 설명한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2항에 있는 국가·지자체가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꼭 국가·지자체가 아닌 경우에도 일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1항에서 보조금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직접 시행, 설치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보조금으로 비용으로써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 경우를 다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이게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2항은 아예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럴까요? 차라리 삭제를 하지요.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뒷단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시설을 한 다음에 지원금을 또…… 보조금이라는 게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고개를 저음)

○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그렇게 오해를 산다고요.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맞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앞에 기반시설 다 해 준 다음에 뭔 보조금을 또 준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생각이 확장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대로 2항은 아예 삭제해 버리면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항으로 충분하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충분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2항은 없는 걸로.

민주당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관 위원 저는 잠깐……

차관님, 지금 현재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거기에는 한 1000억이 지원됐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특화단지에 1000억이 지원됐습니다.

○ 이재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클러스터가 또 지정이 된다면 추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추가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재관 위원 이 기준에 적합한 내용에 대해서?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럴 수도 있고요.

○ 서왕진 위원 1000억 지원이라는 건 어떤 형식으로 된 겁니까? 비용을……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아까 말씀드린 전력·용수, 4대 인프라 관련해서 기존에

그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기업이 부담한 상당한 비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지원 형태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금들의 재정지원이, 그런 형태는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누구한테 전달이 됩니까? 기업이 직접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기업에게 직접 그게 전달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 체계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정부에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업단지공단한테 출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공단이 개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각 개별 산업단지 개발 주체한테 그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84페이지에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할 수 있다’ 둘 중에 뭘 할지……

○소위원장 김원이 아까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로 봐서는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그렇게 아까 정리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2항은 1항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삭제해도 될 것 같네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이것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서왕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1항에서 그 밑에 1·2·3·4·5·6·7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까 정리가 우선 다른 의원들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전력·용수·폐수·폐기물 그다음에 도로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면 그 안에서 정부가 추가로 반영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중에서 여기 수정의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좀 넣어 주면 어떻습니까, 특히 RE100과 관련해서 이것을 강조·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소위원장 김원이 2호 얘기하는 거지요?

○서왕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넣어 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걸 넣으시려면요 이 전력에다가 차라리 팔호를 치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1호에다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전력’ 팔호 열고 ‘신·재생에너지 포함’ 팔호 닫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서왕진 위원** 언급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포함해서 수정하는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90쪽입니다.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입니다.

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연구개발, 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참고로 첨단전략산업법에서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92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실무 수정의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조 4호에 있는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용에 대한 지원으로 이철규 의원안처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보조금 빼지요? 고용에 대한 지원……

○**소위원장 김원이** 전문위원 의견 들었고요.

정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게 용어가 다소 여러 법에 혼선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발의된 제안된 내용에서 얘기하는 고용보조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업위기대응지역 같은 곳에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를 안고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서 이 조항하고 잘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가첨단법에서 용어가 혼선이 있게 ‘고용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용어의 의미는 법 해석상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고용을 지원해 주는 그 제도로 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조항은 어디다 넣게요? 첨단산업법에 있었던 그 조항은 어디 들어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저 뒷부분에 가면 또 고용 지원에 관한 일반 조항이 나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 뒷단에 나온다는 건 몇 조예요, 고용 지원에 관한 일반?

176쪽에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논의할까요, 이것은? 여기서는 빼는 게 좋겠다, 정부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얘기 듣겠습니다. 어때요?

고동진 위원님은 정부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고요.

김동아 위원님, 의견 있어요?

○**김동아 위원** 중소기업 지원이니까 보조금이라고 해도……

○**소위원장 김원이** 176쪽에서 또 다룬다니까요 그때……

○**김동아 위원** 176쪽은 전반적인 인력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조문대비표로 보자면 192쪽에 있습니다만 ‘고용에 대한 지원’,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수정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고동진 의원님 안에는 ‘고용보조금’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항이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안의 대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또 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동일하게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사항에서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 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도……

○**소위원장 김원이** 이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첨단법에 있는 규정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냥 두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일단 두고 가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됐고.

그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넘어갈까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3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입니다.

7개의 제정안은 모두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급 목적이나 대상·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는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또 세제적인 특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때 지급 목적이나 대상, 결정 주체, 절차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및 전력망 등의 산업기반시설 지원 규정을 의무로 할 것인지 재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안별로 밑에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제정안별 비교표입니다.

보시면 보조금 지원의 주체는 국가·지자체를 대부분 하는데 김태년 의원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원 내용에도 일부 차이는 있고 절차·기준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96쪽에는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527억 불—약 한화 73조 원—정도로 보조금이나 대출·보증 등

의 지원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서 25% 세액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TSMC의 일본 공장에다가 약 4.4조 원 정도 지원하는 등 해서 전체적으로 15조 원 정도 제조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만도 지원 계획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발표된 내용이 약 65조 원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에서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서 각각의 개별 법령들을 만들었습니다. 9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 드린 걸 기준으로 다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21조 제일 하단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들을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또는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0~101쪽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위탁 산업, 파운드리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여부를 이철규 의원안에 있는 것을 우선 반영을 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국내의 유사 입법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 봤고 미국의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ct)도 확인을 다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여기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재정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이 관련된 지원을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탁생산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생산은 파운드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하고 그 법안의 규정 내용 중에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상호 연관성이 다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앞에 있는 조항들에서 여기에 관련된 지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16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16조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정의견의 16조 이것은 아예 빼자? 16조 전체를 들어내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은 천천히 보시고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약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시렵니까?

○**고동진 위원** 먼저 16조는 파운드리를 지원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시 잘 보시면 위탁, 그러니까 텐트리스 업체가 파운드리에 의뢰를 할 때 이걸 몇 차례에 걸쳐서 산자부에다가 설명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5나노 이하는 제품 하나 들어가서 만드는데 100억 그다음에 7나노 같은 경우는 50억 이렇게 텐트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실은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생산을 할 때 텐트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미했던 거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텐트리스면 설계?

○**고동진 위원** 예. 설계에서 실제 샘플을 만들 때 파운드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탁생산을 들어가는 시점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차관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미국의 칩스법 관련해서 보면 사실 인센티브를, 이걸 서브시디(subsidy)라고 하는 용어로 안 쓰여 있어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칩스법에는 매년도 집행하는 그 금액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인센티브를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로 할 건지 말 그대로 그냥 인센티브라고 읽을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것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해 왔는데 왜냐하면 실제 반도체 특별법에는 금액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실제 집행하는 단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그 안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명칭은 넣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반도체 특별법을 상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산자위원회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형수 위원** 16조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조항에 패키징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혹시 보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우리가 불리한 점이 없을지 정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건 직접적으로는 모르겠는데 FTA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부분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괜히 이 단어가 들어갔다가 나중에라도 혹시 통상 분야에서 이런 뭘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 들어간 부분을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관세를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없는지, 그걸 당장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기는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기재부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용어, 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말을 예시를 하게 되면 실제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입주기업이라든지 그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 투자도 있고 출연도 있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다 출연이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열거돼 있는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에 이 보조금이 자꾸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법체계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인 재정지원 조항으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이요.

○**고동진 위원** 제가 먼저……

○**소위원장 김원이** 고 위원님.

○**고동진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WTO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 봤는데 반도체 특별법에서 특정 기업을 정하지 않으면 현재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을 하거나 운용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품이나 장비의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이 세 가지에 반도체 특별법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하고 반도체과의 검토를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미국의 칩스 액트에도 보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표현, 서브시디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 편드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들이 2022년 얼마, 2023년 얼마, 금액을 딱딱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통상 문제라든가 이것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은 지금 얼마를, 150조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박형수 위원** 인센티브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보조금 및 성과급?

○**소위원장 김원이** 인센티브는 성과급이지요.

○**고동진 위원** 인센티브를 우리말로 번역…… 그런데 편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형수 위원**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 이것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저도 박형수 위원님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할 계획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법이 좀 고려돼야 된다 그런 지점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통상조약 중의 하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 글로벌파운드리 그다음에 자국 기업 인텔한테 몇 조씩 다 그렇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미국이잖아요.

○**박형수 위원** 자기네 지원하는 건 문제 안 삼지. 우리가 지원하는 거 갖고 꼬투리 잡아서 이런……

○**고동진 위원** 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을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게 여기서 딱 걸리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는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그런 입장이신 건 맞지요, 산업부에서는?

○**소위원장 김원이** 동의하지 못한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국제통상 쪽에서 검토를 받으셨다고는 했는데 여러 다른 문서들을 보면 ‘만약에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 같은,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서 외국 사업자와 무역상 경쟁 관계를 왜곡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으로 간주돼서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업체로 간주돼서 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다른 보고서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이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에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건가요? WTO 관련한 사항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공개 석상에서, 이게 다 기록에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서류로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회의록에 남지 않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줄 수는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회의록만 남지 않으면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속기사가 있으니까 회의록을 안 남길 수는 없고……

○**박지혜 위원** 정회를……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서 들을까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한 10분만 나눠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이 뒷단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지금 논의되는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서 좀 얘기를 듣고 갑시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으셨고요. 그러면 수정의견의 21조 문제,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고동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해 보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내셨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결론은 안 날 것 같고요. 다음번 논의할 때 좀 더 진전시켜 보도록 하고 그 뒤로 죽……

○**고동진 위원** 이따 끝날 때쯤 또 한번 얘기를……

○**소위원장 김원이** 예, 그러시지요.

○**고동진 위원** 그사이에 위원님들 생각 바뀔 수도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그리고 수정의견 16조는 지금 차관님은 들어내자는 거였잖아요, 정부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제가 고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은 표현

을 약간 수정을 해서 팹리스들에 대한 지원이 좀 두드러지게 해서 남겨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거기도 보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보조금이라는 표현은 저희 입장에서는 빼고……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 수정의견 16조는 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안을 만들어서 다음번…… 어차피 위에 있는 21조 이것하고 같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항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02쪽입니다.

기술개발, 기반 구축,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 사항입니다.

7개의 제정안은 기술개발이나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에서 조금씩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게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동진·송석준·이철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 실증사업 등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기반 구축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나 교육, 주택 등에 대해서도 또 규정을 하고 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항이 다양하게 있는데 관련해서는 105쪽에 자료를 정리해 드렸고 행안부와 과기부, 기재부 또 특허청 등등에서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정안별 지원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표로 11개를 구별해 가지고 보여 드렸습니다. 10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대비표입니다. 106쪽입니다.

106쪽에 있는 사항은 우선 조금 전에 논의하신 그 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7쪽부터 111쪽까지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논의하신 반도체클러스터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다 이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는 우선 다음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기왕 이것도, 조항이 다르니까 또 이렇게 해 놔야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의 사항은 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 재정지원을 할 때 우선 지원하는 산업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109쪽, 4항부터 해 가지고 110쪽까지 있는 사항은 외국인투자기업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김태년 의원안과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동진 의원안, 송석준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이철규 의원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산업 기술 보호 대책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안이 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보호는 지금 반도체산업 지원, 진흥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라서 개별법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쪽, 27조 세제지원과 관련된 특례들은 기본적인 사항을 원칙적으로 정했고 다만 스톡옵션이나 신·재생에너지 조세 감면 관련돼서 우선은 반대의견 등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6쪽에는 부담금 감면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토지 매입 임대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김태년 의원,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근거 규정만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120쪽에 김태년 의원안의 10항으로 있는 사항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동 제도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제도는 법을 개정하면서 삭제가 되었고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 제정안에 담기에는 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우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용보증 지원 규정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김태년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31조에는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다음 123쪽에.....

이게 법안이 많아서 조금 내용을 정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124쪽에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해서 앞쪽에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표현을 한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입니다.

성공불용자 제도를 이언주 의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셔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대체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한 네 가지 정도 의견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스톡옵션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규정 반영인데요. 이 부

분들은 조특법에서 규정이 돼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120페이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반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국토부법에서 구도심에 주택 개발을 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규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120쪽이요? 119쪽?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119쪽 맨 하단 7번에 보시면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주는,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수정의견 3에 보시면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또 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부지 할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조항들이 이 법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호, 2호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이언주 의원님께서 성공불용자 제도 반영 그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 성공불용자는 자원개발 같은 고위험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 반도체산업 지원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다소 안 어울리긴 해.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성공불용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은 일단 대체적으로 의견이 같은가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소거법에 따라……

이것은 많네요.

○**김성환 위원** 정부 측 의견이 비교적 대체로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스톡옵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규정 반영은 27조 전체를 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115페이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해야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아닙니다. 27조는 뒤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정의견에 27조에서는 스톡옵션 이런 것들은 다 빼져 있으니까 수정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정의견대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7조의 규정이 조특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박지혜 위원** 그걸 찬성하시면 스톡옵션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규정도 반대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27조 수정의견에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조항인데 스톡옵션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거기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한다 만다 이런 규정은 하지 않는 거고 그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될 조세 감면해 줄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27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해야 효과가 있는 조항인 것 아닌가요, 지금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워딩?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27조 수정의견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제 감면이 이루어질지 정할 것이다 이런 그냥 원칙론적인 선언을 해 놓은 거지요.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한 걸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로도 조세특례법에 관련한 지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조항을 살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렇게 되면 세제 감면 관련된 여러 가지, 여기에 스톡옵션도 있고 다양한 세제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전부 다 조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에도 감면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들이 많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딱 지원이 되는, 특정이 되는 부분은 조특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나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27조 수정의견에 있는 조항들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관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조세 감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조세 감면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이런 데서 세부적인 조세 특례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세부적인 조세 특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주기 위해서 사실 넣는 거긴 한데 그런 지침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런데 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지혜 위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관련된 전력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쟁력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설치를 좀 촉진하기 위한 조항들이 기존의 김태년 의원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지우는 것이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부분은 반도체 특별법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에 관련된 법률에서 조세 특례를 개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그건 조특법에서 한꺼번에 규정을 해야 된다,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각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통과돼 가지고 옵니다.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했는데 법사위 단계에서 이 부분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특법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이게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였고 정부의 방침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법에서 조세 특례에 관한 것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걸로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

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것은 조특법 개정안을 같이 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산자위에서 산자 위원 중의 누군가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맞나요, 차관님?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 신재생 관련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드셔서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저희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이 법에서 그렇게 연동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별도의 법률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된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지요.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궁금해서 한번 강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도 조특법에 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해서 다시 조특법을……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개정안을 내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어떤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니까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법안을 내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똑같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 조세특례제한법을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김태년 의원님이 조세특례법 낸 것 아니에요?

○**정진욱 위원**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의……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법체계입니다.

○**정진욱 위원** 법체계의 대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박지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감안해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것의 내용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넣어서 법 조항을 좀 바꿀 수는 없나요? 지금 이게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데 느닷없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낸다는 게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반도체 경쟁력에서 RE100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현장에서 중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조문 속에 녹여내서

지침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제가 이해하고 있기도는 27조 조항이라는 것은 이 법 제일 처음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의 1조를 받아 가지고 포괄적인 이 특별법의 어떤 목표를 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 특례를 마련하면 그것에 따라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대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해가 되고요.

○**정진욱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신·재생에너지 설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송전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의 개별 건에 대한 조세 특례는 어차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진욱 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력 강화 또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이런 것 할 때 앞에 뭐뭐 등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한가를 한번 여쭤봅니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반도체 특별법의 어떤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또 다른 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체계 내에서……

○**정진욱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거라면 여기서 전혀 논의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핵심 경쟁력 중의 하나가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온 전기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전혀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당분간 쓰려고 하는 것은 LNG가스 3GW를 만들어서 당장 소요되는 전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와 연관해서 용인 클러스터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단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흐름을 보면 재생에너지의 부분이 여기의 핵심 경쟁력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비싼 전기를 가지고 반도체 생산하게 되면, 물론 위낙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서슴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법안을 만든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지침을 줌으로써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조세특례법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함께 함으로써 사업자도 그 방향으로 가고 또 특례법을 통한 지원도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침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얘기 듣고……

○**고동진 위원** 정부안도 나중에 말씀하시고 제가 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정부 측 의견을 물었으니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예, 먼저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의 그런 우려나 걱정 이것은 충분히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법체계상 일반적인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이 조항에서 그것을 다품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신·재생 등’으로 해서 이렇게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특정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조항은 이런 정도로 일반적인 규정으로 두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조항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든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그렇게 논의를 해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다른 조문상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조금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를 들어서 전력 할 때, 부족하지만 아까 박지혜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전력설비 기반시설에도 신·재생 설비도 포함을 했고 하니까 그런데를 곳곳에 그런 관련……

○정진욱 위원 아니, 이 법안 속에서 어디에 그것을 위치시키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일단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시고.

○정진욱 위원 보고 말씀 나누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일단은 그러면 당장 즉답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잠깐만, 고동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실 얘기가 있으면……

○고동진 위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중에서 아까 전력 측면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이것을 우리가 포함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력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우리 산자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열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 전력을 공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지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지요.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가져가자. 그런데 반도체산업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로서는 적용하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0.0001초라도 끊기게 되면, 반도체산업의 공장 흐름이 24시간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아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아닌가요? 그 부분만 먼저.

○박지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하자는 거잖아요.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맞는데 지금 이것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하고 다……

○박지혜 위원 지금 태양광 100%로 하자는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조세특례법에 관련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루되 정 위원님께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딘가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자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욱 위원 저한테 질문하신 거지요?

○**서왕진 위원** 거기는 아마 고 위원님하고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 가지인데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세특례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꼭 담겨야 된다. 그런데 일반 항목에 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항목에라도 그 부분을 담아 놓으면 그것은 저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일반 항목으로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안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은 아까 차관님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는…… 정진욱 위원님 이 정도면 될까요? 일단은 조금 더……

○**정진욱 위원** 아니, 저한테 뭐 좀 물어보신 게 있어서. 전기와 관련해서 물어보신 게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고동진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아니, 여기서 두 분이 토론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정부 측에다가 질의해서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다 막지는 않습니까마는 가능한 한 정부 측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재관 위원님은 다른 얘기인 거지요?

○**이재관 위원** 예.

○**서왕진 위원** 아니, 제가 그냥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첨단법 안에도 기왕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법 속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조세특례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자금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조세특례법에만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첨단법에서도 일반적인 규정만 있고 반도체와 관련된 세액공제 이런 조치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도, 하여간 조특법 개정안을 누군가가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수석님, 118쪽에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그 내용 그게 지금 현재 이 안에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논의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건가요?

○**박지혜 위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은 124쪽의 그것과 유사한 규정인데 뒤쪽에서 제가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은 그냥 뒤에서 논의하시지요.

124페이지는 지금 다른 조항인 거지요? 같은 조항인가요? 같은 조항이네. 얘기하세요. 얘기해야겠는데.

○**이재관 위원** 여기에 ‘수도권 제외 여부 논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김태년 의원안에도 보면 수도권 입주 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법안에 그 정신이 감안돼야 된다고 하면 김태년 의원안의 취지대로 수정의견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그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지금 그 조항을 118쪽에다 넣지 말고 124쪽에다 넣자는 게 수석전문위원 의견이지요? 그래서 124쪽, 125쪽 보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관 위원님 의견에 덧보태서, 사실은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서, 좋지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가려 그래요, 국내복귀기업들이. 그래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방에 터를 잡을 경우, 그렇게 제안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여기 원안에 수도권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형수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수정안에?

○**소위원장 김원이** 어디에 있지요?

○**이재관 위원** 118쪽 김태년 의원안에 보면 그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 있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서왕진 위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118페이지 김태년 의원안에 중간 밑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즉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원을 하는데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얘기지요?

○**이재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저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반도체 특별법이라면…… 원래 기본적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도체 특별법이라 하려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복귀하는 기업이 수도권에 가도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지 특별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얘기 좀 해보세요. 나는 그냥 그런 감이 드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국내에 돌아와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특례를 주자는 거지요.

○**이재관 위원** 예.

○**박형수 위원**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특례를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일반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의 내용이 수도권과 지방을 분류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수도권을 전제한 법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박형수 위원** 물론 전제는 아닌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원래는 복귀기업에 대해서 지방에 가는 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주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한해서는 수도권에 오더라도 특혜를 주겠다 그래야지 많이 복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여기서 아예 국내복귀기업은 빼야지요. 법안에서 아예 빼 버릴까요? 사실 그게 맞지요.

○**박형수 위원** 국내복귀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해외투자를 했다가, 미국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돌아와 갖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온 경우에는 특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그게 일반적인 복귀를 하는 법안인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것도 인정해 준다고 해야지 복귀도 많이 될 것이고 반도체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되어야 특례는 특례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서왕진 위원** 가치 충돌 문제니까.

○**박형수 위원** 사실은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에 예외를 두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 측면이 있지요.

○**박형수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이남으로, 어디 이남입니까, 대전 이남인지 판교 이남으로 못 가는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클러스터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하고 섞어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 그 문제는 사실 국내복귀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클러스터 문제도, 아까 여기 내용 보면 기존의 수정법 제외 지역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 논의까지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지요. 국내복귀기업은 특례에서 뺀다 이것도 사실은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박형수 위원님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외국에서 계속 공장 차려 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거기 있겠지요. 안 오겠지요. 그게 잘 안 돼서 돌아오는 기업들이 새로운 출로를 찾아서 국내로 복귀하는데 수도권에 자리 잡는 기업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반론에서 또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서왕진 위원**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반도체산업의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요.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열어 놔야지요, 대만이나 일본의 케이스가 있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 조항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이것도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몇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통으로 국내복귀기업을 덜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의 김태년 위원님처럼 괄호 열고 수도권으로 오는 경우는

제외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수석님이 어디에다 어떻게 이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다음에 또 논의해야 될 게, 이 조항에서 우리가 더 논의를 못 한 내용이 어디 있지요? 대체적으로는 정부 수정안과,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한 조문이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우리가 기재부나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쟁점 빼고 대체적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몇 가지 조건 빼고 대체적으로 정부의 수정의견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한 조문으로 다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쟁점사항은 쟁점사항대로 좀 남겨 놔주십시오, 합의 처리가 안 된 부분은.

그리고 이 조항은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넘어갈까요? 진도를 일단 한번 일별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28페이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8쪽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입니다.

6개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뒤에 제정안별 비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타조사 대상 우선 선정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특구 지원 사업하고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동진 의원안은 4개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밖에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사업 해서 5개의 경우를, 김태년 의원안은 2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31쪽에 보시면 예타 면제 가능한 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계십니다. 박수영·송석준 의원안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고동진 의원안과 같이 예타 면제 또는 우선 선정에 대해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진욱 의원안, 이철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도록 그리고 소관 상임위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132쪽의 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의견에 제시를 한 132쪽부터 134쪽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타조사에 대한 특례와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왜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을 지원하는

거지요? 반도체기업을 지원하면…… 반도체법인데 왜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만 지원해야 될, 반도체 지원에 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부에서 무슨 의견이 있는지, 입주를 안 하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나 이런 게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입주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 법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유도라기보다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클러스터 내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입주기관은 거기에 어떤 테스트베드라든지 검증센터라든지 이렇게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입주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존의 클러스터로 지정된 그 공간에 있는 입주기관들에 대한 지원 조치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하려는 정책적 목표는 뭔가요? 클러스터에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면 좀 더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그거 안 들어오면 좀 지원이 약하고 그런 뭔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곳에 대해서 뭔가 이 클러스터가 다른 나라의 클러스터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주자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빼아들이고 밖에 있는 건 배제하고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김동아 위원 말씀을 해석하면, 판교의 팹리스가 아직 클러스터 지정이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 지원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고동진 위원** 클러스터가 지정 안 돼 있다고 지원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은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 측이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지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36쪽입니다.

인허가 특례 및 규제개선 신청 사항입니다.

6개의 제정안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 등이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도 별도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규제개선 신청과 관련해서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에서는 산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허가 특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소관 부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 수정의견으로 138쪽에서 139쪽까지 제안한 내용은 인허가 의제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138쪽 중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해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대로 사전 협의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40쪽 이하 142쪽까지 있는 내용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첨단산업법에 따라 있는 조항이기는 한데 인허가 의제가 충분히 되면 신속처리 특례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3쪽, 규제개선의 신청입니다.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48쪽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박형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아까 지나갔는데 예타 면제 관련해 가지고 정부 측에 하나 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SK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하더라도 면제된 사업에 대해 갖고 다시 진행해서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또 예타처럼 그렇게 기간이 걸리고 한대요. 그래서 거기도 면제할 수 있는 것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기재부가 한번 얘기하든지 입장이 어떠신가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타가 면제되면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정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사전적정성 검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예타하고 다르게 되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도 그거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던데?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그것은 저희가 개별 사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예타를 어차피 면제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재정지원을 하기 이전에 뭔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딱 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예 그것까지 다 면제하는 건 어렵다?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 어차피 어떤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라도 검토는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기 전에.

○**박형수 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어디다가 넣을 수는 없을까요? 산업계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찍어서 요청을 하시더라고.

○**소위원장 김원이** 기간 제한을 좀, 몇 개월 안에 처리한다 이런 규정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처리 기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박형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 그걸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박형수 위원님 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10년짜리인데 2년의 과제가 끝나고 또 2년 있다가 진행되고 이랬을 때 이게 2년 단위로 신규 프로젝트화돼서 새로 예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박형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대책 만들어어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첨첨산중. 이거 하나 면제해 줘 놓고 또 다른 틀을 걸면 그게 면제가 면제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재부 국장님. 예를 들어서 2개 월 안에 처리한다든지 이런 기한을 정해 주면, 끝단을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박형수 위원님께 보고드려 주세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시 인허가 특례 및 규제개선 신청 관련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정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또 아까 김태년 의원 안에서 나온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도 첨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법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사실상 수정의견에 동의한 거고 오히려 빼놓은 부분 까지 추가해도 좋다는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왕진 위원** 신속처리 아예 넣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넣는 걸로. 차관님이 동의해 주시는데 우리가 굳이 안 넣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허가 특례 및 규제개선 신청도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49쪽입니다.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지자체·지역주민 지원 등입니다.

5개의 제정안은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확충에 대해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도로망까지 포함해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박수영·이언주 의원안 2개 안은 지자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수영 의원안은 지역의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151쪽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그다음에 그에 관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3개, 국가수도기본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설치와 관련된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규정 박수영 의원안, 이연주 의원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수영 의원안에 있는 지역주민과의 협약, 근거 규정 여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는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52쪽의 수정의견 3항으로 있는 정부 의견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수정의견 3항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에서 ‘산업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당초 실무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 안을, 3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지역주민 협약 근거 여부만 정하면 되겠네요.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다른 의견들은 동의하고요.

지역주민과의 협약이라든지 지자체 주민 피해 최소화 관련된 조항은 규정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의 전반적인 취지가 인프라도 빨리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속도를 좀 높이고 규제도,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추가적인 절차를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송·변전선로 같으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역 경과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것은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어떤가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반영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주민 참여적 입장에서 주민과의 협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과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동아 위원** SK나 삼성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SK가 지역 협약 체결하고 했더라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별다른 의견 없으면 이 조항은 정부가 얘기한 대로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53쪽입니다.

국가반도체산업 종사자 특례(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등) 그다음에 수도권 공장 증설 등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4시인데 이것을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밀고 가 볼까요?

(「이것까지 한번 하고 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는 데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3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종사자 중에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그다음에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중에서 소득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근로 등등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54쪽, 이철규 의원안의 경우에는 신상품,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근로소득 수준이나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로 근로기준 적용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또 부칙에서 그 유효기간을 35년까지, 이러한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을 35년까지 한시적으로 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153쪽의 해외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는 제도로 근로시간의 적용을 일정한 대상자에게 제외하는 제도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직접적인 입법례는 없고 일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된 것이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안과 이철규 의원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용 대상 그리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 여부, 근로기준 적용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대한 연구개발, 스톡옵션과 관련한 조세특례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재부 등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병역특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을 해서 병역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의 직접적인 심사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157쪽입니다.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 4개의 의원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두자는 규정이고 특히 송석준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까지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8쪽부터 조문대비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을 특별히 드린 것은 161쪽에 있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수도권 입지 특례를 규정하는 것만 수정의견으로 제안을 했고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서 자연보전권역은 우선적으로는 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부문별로,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조 부분,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는 이철규 의원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대한 특례도 이철규 의원안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그 부분은 앞서 논의된 것처럼 조특법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해서 삭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수정의견 1항 중 네 번째 줄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있거나 없거나 이 1항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마치 수도권 지역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하나하나씩 쟁점별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럴까요? 일단은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앞에서부터 보지요. 조문별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의견 조문별로.

정부 의견은 지금 이철규 안을 기본으로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우선 158쪽에 34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이 이철규 의원안대로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34조, 37조를 이철규 의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근로기준법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반도체 특별법이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자고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쟁점들이 막 끼어들어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쟁점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가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 문제로 옮겨붙어서 다른 사회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조항 자체를 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조항 삭제하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분 의견 주세요.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이재관 위원 다른 내용 해도 돼요?

○**소위원장 김원이** 일단 이것부터 정리……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가닥을 타 보지요.

○**고동진 위원** 일단 김성환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격을 제가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제조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R&D 인력이거든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설계하는 사람은 사실 라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개발업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현재 한 일주일 단위로 예외 근로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R&D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본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외 근무시간을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한 최소 3개월 단위로 한다거나 그런 게 산업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게 일단 현 상황임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특별법에 이렇게 되면 다른 산업에서도 또 그런 요구사항이 나올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들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이렇게 쉽게 물러서시면 재미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하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술과 관련된 이게 지금 숨이 막힐 지경인데 너무 절절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고 특별연장근로도 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하면 3개월까지 정산 기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특별연장근로까지 하면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현재의 제도하에서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업계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기술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건강권 이런 것은 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철규 의원안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조건도 당사자들하고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엔지니어도 있고 아주 핵심적인 차세대 상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도 있는데 특히 그런 핵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근로기준법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만 되는 개발 과정에서는 시간 배분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그런 어떤 제한이 없이 경쟁하는 나라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여기에 몰입해 가지고 계속 뛸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앤비디아나 그런 데로 아직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52시간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근로기준법

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업종에서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좀 넘어가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소위원장 김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엔비디아로 최근 삼성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많이 넘어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근무 형태 때문에 그랬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근무 형태……

○**소위원장 김원이**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 측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저는 문제의식의 어떤 근본 출발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의 기술자들이 가는 이유가 자기에 대한 예우와 보상 문제가 주지 근무 형태 때문에 그런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어떤 근무 형태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지요. 개발의 효과를 내는 그것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회사가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라도 자기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인색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는 좀 바뀐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옛날에 삼성 핸드폰에 글자 자판인 천지인을 개발하신 분이 받았던 보상을 들었더니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발명품 아닙니까? 사실 그 많은 모음을 단추 3개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가져간 보상을 얘기 듣고, 내가 기사 읽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한참 지났으니까 달리 변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업부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근무 형태보다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선제적인 거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의견을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의 기술자들과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자는 산업부의 주장은 단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는데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개발자들이……

얼마 전에 MBC ‘스트레이트’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자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근무 형태? 웃기지 마라예요.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너네가 아냐 이런 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자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것을 풀어 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날밤 며칠 더 샌다고 좋은 기술이 개발된다? 지금이 80년대입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논의가 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근무 형태 얘기입니다.

○**박형수 위원**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근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 부분을 그냥 막연히 이것을 여기다 넣자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연구개발하는 분야 전체에서 이런 근로시간에 대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이라면 반도체 특별법에 이것을 특별히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넣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욱더 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논거가 있어야지 지금 이 법안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또 일본의 사례에서 이런 근로시간 예외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산업 또는 특정 분야의 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한다라는 근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여기 일단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한 자료들을 좀 준비를 안 하셨던 것 같고 추후에라도 그런 준비를 하셔갖고……

반도체 업계들로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근로시간제 52시간 여기다 넣을래 근로기준법에 넣을래 논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허성무 위원** 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업계 측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나 현장의 이야기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 R&D 인력들이 우리보다 2배 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보상은 3배로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해 줬을 때 지금보다 보상을 2배나 3배로 더 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업계는? 우리 업계는 맨날 인력 유출을 걱정하고 연구개발 시간이 짧다고 걱정을 하는데 우리 업계가 세계적으로 더 경쟁력 있고 더 성과가 좋은데도 보상 체계는 왜 항상 낮느냐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대안들이 제시될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 어떤가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고동진 위원** 여기다가 자세하게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예외 조항, 예외 적용을 받을 경우에 본인과 합의가 되고 그러면 그 합의 사항에는 사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고동진 위원** 보수는 사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일할 때 사실은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해 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52시간으로 해서 탄력근무제 3개월 단위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은 있지만, 엔비디아는 돈 많이 받고 이거하고 딱 하나 비교를 해 보면 그런 근무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과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일을 하다가 매일 불 꺼지면 그냥 나가야 되고 이게 몇 시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과 그것은 엄연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는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이렇게 또 한번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한 데이터라든가 근거 데이터가 마련되고 토의가 이루어지면 그때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박형수 위원님 얘기 제안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고동진 위원님께서 김성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위원들 간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수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연구 자료라든가 혹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산업부에서 좀 더 제출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넘기는 게 어떨까요? 대체적인 합의는 된 것 같으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그런 논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상위 5%가 1억 4000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1억 4000 연봉을 받는 사람이 보통부장급 연구자들이라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수 체계 플러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가 기대할 수 없는 보상 체계를 갖추면 이것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저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민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지금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자가 임금 플러스 자기의 어떤 그 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이나 이런, 그런데 기업의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부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 설득할 시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한 2시간 20분째 달려왔는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재관 위원** 이것까지 마무리, 하나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계속하시지요.

○**이재관 위원** 차관님, 지금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인근에 부지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장입지? 어떤 것 때문에 그려냐면 성장관리권역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용인의 일반산단도 있고 또 국가산단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성장관리권역까지 확장하는 현재의 안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어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본래의 법 취지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과의 어떤 새로운 갈등으로 이 법안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현재 지방에 가 있는 그러한 반도체 관련 기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관련 조항은 두 가지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불구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행 입지법이나 관련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과밀하고 자연보전지역은 어차피 공장을 신증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총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신증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항은 그것을 그대로 땐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필요하게 ‘수정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만 삭제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2항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법령들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장이 총량을 받아놓고 있는 물량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게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사업자들이 내가 여기에 무슨 공장 짓겠다, 무슨 공장 짓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배분해 줄 때에 이게 기존의 다른 업종보다는 반도체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제 판단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반도체산업이 특별법이고 하니까 그 정도 취지는 담을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고동진 위원** 동의합니다.

○**서왕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1항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1항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러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성장관리권역 내에’ 이런 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서왕진 위원** 이미 그것은 하고 있는 건데 공장 총량 허용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미 다른 법령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서왕진 위원** 1항은 굳이 필요가 없고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아 위원** 동두천 뭐 이렇게 낙후된……

○**이재관 위원** 굳이 넣어서 쟁점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

○**소위원장 김원이**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속기사 죽습니다.

그러면 김동아 위원님 따로 말씀하세요.

○**김동아 위원** 저도 이 30조가 제목하고 내용이 좀 맞지도 않고 뭔가 제목은 수도권 입지에 관해서 특례를,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이런 데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옳긴 거고, 2항 같은 경우가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무슨……

○소위원장 김원이 2항만 남기자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2항만 남기고……

○김동아 위원 제목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제목을 그러면 그냥 ‘입지에 대한 특례’ 이런 정도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님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그려면 그런 조항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리고 병역 관련한 것은 그냥……

○서왕진 위원 지나갔어요.

○김성환 위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원이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안을 반영하는 것이었지요?

○고동진 위원 이철규 의원안을 반영하는……

○소위원장 김원이 병역특례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 이철규 안이 뭐예요?

○소위원장 김원이 159페이지.

○서왕진 위원 병역은 아직 논의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논의를 안 했어요.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갔길래 의견이……

○박지혜 위원 아니, 지금 수정의견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정부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저희는 37조는 이철규 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요, 이철규 안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58페이지, 정부는 이철규 안 제34조, 37조를 반영하자는 의견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34조는 우리가 위원들 간에 논의를 했고, 37조는 아무도 의견을 안 내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 측 안대로 37조를 이철규 의원안대로 반영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뺄 건지.

○김동아 위원 제 의견은 37조는 어차피 노력해야 된다니까 넣어 두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37조 제목을 특례라고 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특례를 위해 노력하는 수준인데.

○소위원장 김원이 노력도 특례지요, 다른 것은 아예 노력하는 조항이 없는데.

○김성환 위원 현재도 지정되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병역자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을 충원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할 때 반도체 업계를 조금 더 배려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대기업이 안 들어가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벤처기업 중심으로 병역 특례 인력이 들어가요. 대기업은 요새 못 들어갑니다. 못 받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이 사실은 좀……

○**김성환 위원** 산업기능요원이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런 정도는.

○**고동진 위원** 예, 그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아까 수석님 의견은 37조의 제목을 ‘등에 대한 특례’에서 그냥 ‘선정 등’까지만, ‘에 대한 특례’를 빼 버리면,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이러면 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팬찮은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정부 측 동의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37조는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걸로 하고요. 34조는 좀 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다, 37조는 방금 제목을 바꿔서 반영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됐지요, 스톡옵션 반영 여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것은 조특법에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중에.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입주에 대한 것도 아까 김동아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항은 삭제하고 2항만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161페이지, 수정의견 30조 1항은 삭제하고 2항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제목도 ‘수도권’은 삭제하고 ‘입지에 대한 특례’로 수정을 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2항은 살리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칩니다.

이제 드디어 몇 가지 조항만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5분에 볼까요?

○**김성환 위원** 10분만 쉬어요.

○**소위원장 김원이** 10분만? 그러면 35분.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63페이지입니다.

기금 또는 특별회계 조성 등입니다.

6개의 제정안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조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이고 고동진·박수영·이언주·정진욱 의원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철규 의원안은 추가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예산의 이월, 회계사무의 위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와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164쪽, 다른 특별회계·기금의 활용입니다.

김태년 의원안에서 소부장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에서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65쪽은 제정안별로 명칭이나 목적, 세입세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분들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6쪽까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167쪽입니다.

우선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철규 의원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170쪽의 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김태년 의원안에 있는 내용은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였고 이철규 의원안에 있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그다음에 173쪽의 예산의 이월 등, 174쪽의 회계사무의 위탁 등에 대해서는 이철규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특별회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다만 특별회계의 원칙상 특별한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세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소부장법에 있는 소부장특별회계에다가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부장특별회계의 명칭을 반도체소부장공급망안정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왕진 위원님부터.....

○**서왕진 위원** 소부장특별회계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대부분 재정에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특별회계의 취지와 반도체특별회계의 취지가 다른데

이 2개를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마음의 상처만 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164쪽의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반도체에다가 소부장을 섞어 버리면 다른 산업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어서 그 돈이 그 돈이기는 한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나 특별회계를 거쳐서 하나 다른 돈 빼서 하나 결국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일 텐데 이름을 반도체랑 소부장을 섞는 것은 반대하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특별회계나 기금의 필요성은 일단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소부장법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저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별도로 만들어 놓고 소부장에 있는 돈을 약간 이쪽으로 갖다 쓰는 게 낫지.

○**고동진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세수에 따른 거기 때문에, 165페이지에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당의 박수영 의원 그다음에 이언주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이 여기에 세입과 세출 항목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또 이야기하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본 전부 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예산의 규모를 얼마로 시작할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우리가 정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님 안에는 세입세출 항목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 4명이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세입세출 항목도 자세하게 구분을 해 놨고 이것을 가지고, 이게 사실 돈 주머니가 크든 작든 없으면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의 내용에 따라서 기한 정하는 것 없이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위원** 별도의 이름으로.

○**소위원장 김원이** 별도의 이름으로, 반도체 특별회계.

○**고동진 위원** 반도체 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 고동진 의원님이나 박수영·이언주·정진욱 의원님은, 이철규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 측 어떤가요, 위원님들 의견은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기재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부장특별회계도 그렇고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반도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세입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저희가 반도체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부장 지원하는 사업이 예전에는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소부장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그 대부분의 소부장 관련 세출사업들을 다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것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넣어서 그렇게 사실상 특별하게 운영하는 거라서 말씀 주신 대로 특별회계의 어떤 기본적인 원래의 의미는 상당히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부장특별회계를, 있는 특별회계를 왜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소부장…… 실은 소부장특별회계가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급망 안정화까지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 특별법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경제 안보의 개념도 거기 특별회계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부장특별회계에서 많은 세출사업들이…… 실제로 반도체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혁신생태계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분야가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와 관련한 소부장 사업들이 소부장특별회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특별회계를 또 새로 만들게 되면 과연 이런 사업들을 반도체특별회계에 넣어야 될지 소부장특별회계에 넣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다 구성되는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그런 사업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이 보다 일목요연하고 나중에 실제 지원 사업을 전체 편성 할 때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그 소부장하고 공급망 안정화는 이미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다 같이 넣어서 하자는 게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저도 의견을 잠깐 내면, 정부 측 의견을 들으면 효율 측면에서는 정부 측 의견이 일견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좀 안 맞지요. 소부장 내에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도 꽤 있겠지만 반도체가 아닌 소부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가 묶어 버리면 나중에 서로 따내려고 소부장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서로 따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거기에서 반도체 특별법도 따먹겠다고 하면 그것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사실 반도체 특별법이 어마어마한 국민적 관심하에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쪼개 쓰는 거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쪼개 쓰더라도 독립적인 반도체 특별회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 의견인 것 같은데……

김성환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나요, 아니면 정진욱 위원님?

○김성환 위원 어쨌든 미래산업의 핵심이 AI와 관련한 반도체 그리고 기후위기는 여러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핵심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특별법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아 보이잖아요, 서로 소부장을 거쳐서 그 돈을 이쪽으로 빼내는 한이 있더라도 여하튼 모양 빠진다.

그러니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고 돈주머니를…… 예를 들면 소부장에 1조 넣었던 것을 3000억은 반도체에 넣고 7000억을 소부장에 넣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전체 특별법의 취지에 맞아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같은 얘기고요.

고 위원님.

○고동진 위원 또 하나, 특히 소부장특별회계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데 그것 맞아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소부장특별회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 안정화 까지 넣어서 23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개정된 상태에서 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안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의 규모는 작아도 되지만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는 가져가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위원** 별도로.

○**소위원장 김원이** 산업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재부 눈치보지 마시고 그냥 소신을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소신은 확실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이 이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제목을 반도체 특별회계로 하든지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로 하든지 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걸로 해 볼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렇게 하고.

다음 논쟁이 또 뭐였지요? 세입세출 규정 여부 내용 논의는 고동진 위원님은 세입세출 항을 가져오자 이거지요?

○**고동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어떤가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산업부는 어떤가요, 가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만약에 설치를 해야 한다면 그 관련 규정들이 따라붙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오케이.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세입세출 규정 여부에서 세입세출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러면 주로 고동진 의원님하고 네 분이 냈던 안 그대로 가져오면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석님이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고동진·박수영·이언주·정진우 의원님 안에 세입세출 항목이 죽 있잖아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산업부하고 의논해서 항을 만드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조문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 된 건가요?

다른 특별회계를 위한 지원 규정 이것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김성환 위원** 넣어 놔야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넣어 놓자는 거지요?

○**김성환 위원** 예, 붙여 놔야지요.

○ 소위원장 김원이 이재관 위원님.

○ 이재관 위원 차관님, 고동진 의원님 안인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력망을 하게 되면 반도체산업에만 쓰는 것과 기타 쓰는 게 분류가 가능한가요, 설치를 할 때, 전력망을 구축할 때?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기술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반시설에도 전력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재생을 제외하고 전력 분야의 전력망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전기가 들어오려면 산업단지 안에 그 전기를 받기 위한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변전소까지 어디선가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를 쏴 줘야 됩니다. 그 쏴 주는 선로를 접속선로라고 부릅니다. 그 접속선로에 대해서 지금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거기 중소기업들까지 다 해서 여러 업체들이 공용으로 쓴다는 몇 가지 조건을 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일부 덜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이재관 위원님, 해소가 되셨나요?

○ 이재관 위원 예.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규정 여부는 아까 고동진 위원님하고 김성환 위원님 의견대로 땡겨 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조항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 소위원장 김원이 그다음에 전입, 월, 회계사무 위탁 등 규정 반영 여부 이것도 필요 한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이것은 첨단산업법에 있는 사항들이고요.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사항들입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첨단산업법의 기준을 준용해서 한 거라니까 이것은 큰 의견 없으면 이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된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력양성 지원이네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76쪽입니다.

인력양성 지원 등입니다.

먼저 7개의 제정안은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대학의 설립 또는 이전, 계약학과 설치, 인력 양성 사업 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고동진·박수영·이철규 의원안은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또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해서 여덟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추가로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를 위해서 사증 발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대통령령과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은 대학의 설립,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 계약학과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 중에 보시면 과기부에서는 해외 우수인재 사증제도 관련해서 과기부장관도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고용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79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 수정의견에는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겹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실 것이 180쪽 비고란의 밑에 있는 것처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을 지원하는 것에 수도권정비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사항으로 김태년·정진욱 의원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179쪽 하단에 있는 김태년 의원안은 대학의 반도체특구 이전을 수도권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정진욱 의원안은 팔호의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할 때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정진욱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183쪽은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계속 논의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비용을 지원하는데 의무로 할 것이냐 재량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187쪽입니다.

우선 이철규 의원안에 보시면 반도체특성화대학을 수도권에 설립할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총량 규제를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188쪽에 보시면 김태년 의원안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증원할 때 어떤 규정으로 할 것인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1쪽의 사증 발급 관련해서는 과기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부장관 또는 과기부장관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2쪽의 고용보조금 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정의견에는 고용보조금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전반적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 한두 가지 코멘트가 있습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 지원. 예를 들어서 정진욱 의원님 안을 보시면 18조 1호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대학의 특구 내 설립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특구로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은 수정법상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게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특구로 이전되는 것은 아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조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견이 없고, 188페이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과 관

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환 위원** 교육부에서 다뤄야 될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대학이 준칙주의로 바뀌면서 설립이 자유화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먹고사는 거와 관계없이 여전히 인문이 과잉입니다. 그런데 인문 쪽의 교수들은 싫어할 얘기기는 하지만 총량의 범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외로 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한창 데모하고 있는 동덕여대가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려면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과를 줄이든지……

○**소위원장 김원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김성환 위원** 아니, 예를 들면요.

○**소위원장 김원이** 말씀하시지요.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총량에 대한 규제?

○**소위원장 김원이** 수도권 대학 정원의 총량은 유지돼야 한다.

○**김성환 위원** 예외로 늘려 버리면……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도 그런 의견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도권 정원에 대해서는 수정법에서 총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전체 총량의 범위 내에서 학교 간, 학과 간에 그런 융통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어디선가 예외를 둔다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김태년 의원안이.

○**김성환 위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 지원, 오케이.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는 유지한다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서울에서 수도권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방에서 수도권 오는 것은 총량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리고 아까 수도권 대학 정원의 증원 문제는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러니까 수도권에 정원이 총량 자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는 거고요.

○**김성환 위원** 늘어나지는 않게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늘어나지 않고 그 내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 안에서 해야겠지.

○**소위원장 김원이** 과를 바꾸는 그것을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그런 것은 풀어 주되,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정원 수는 변함이 없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고동진 위원** 일단 저는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발의를 해 놨었는데 여기서 정부안이 재량 규정으로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정부안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

특히 외국인력,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특례 대상을, 법무부 협의 주체를 산업부나 과기부로 변경하는 것 이것은 정부에서 가능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가능합니다.

○**고동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검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우리 인력이 나가는 것은 가능한 까다롭게, 해외의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유연하게 이런 게 원칙 아닐까요?

○**고동진 위원** 지금 우리 인력 나가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은 그만한 보수도 하고 보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베니핏을 주는 것으로 불잡아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현실이고. 국내에 있는 우수 외국인 인력들이 사실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사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은 정부 측도 동의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이해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원이** 동의하는 걸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에 빠진 내용 있어요? 혹시 추가로, 다 있는 거지요? 수정의견에 동의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이것도 넘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정의견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장 김원이** 지방에서 수도권 올라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8호입니다. 181페이지 맨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설립 및’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정원이 들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정의견에서 몇 항이지요? 8호?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정의견 8호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180페이지 맨 밑단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설립 및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 특구로 이전’ 이것은 삭제하자는?

○**정진욱 위원** 위의 부분만, 앞부분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앞부분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특구 내에서 설립할 때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수정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클러스터로의 이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도 하여간 정부 측 의견을 위원님들이 수용한 거니까요 그렇게 조정하시고. 아까 의무·재량 규정도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재량으로……

○**소위원장 김원이** 재량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고요.

그리면 수도권 대학 이것도 수정안대로 다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 이외에는 수정의견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대학 정원 증원 규정 논의 아까 끝난 거였고요. 사증 발급 얘기도 지금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고용보조금 얘기가 남았네요.

192페이지의 수정의견 제35조……

○**고동진 위원** 아까부터 보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도 사실 정부가 받은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제목에서 ‘고용에 대한 지원’으로 그냥 해 주시면 내용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고용에 대한 자금 지원’ 정도면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내가 바꿔 가지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고용 관련된 자금 지원’ 하면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내용을 담으신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담는 게 어떠실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요, 행정·재정지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하여튼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들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김성환 위원** 재정이나 자금이나.

○**소위원장 김원이**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이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표현 쓰나요? 재정지원이지요? 자금이라는 표현은 법률용어로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재정적 지원입니다. 자금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용에 대한 재정을 넣어 가지고 ‘재정지원 등’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뒤에 고용보조금 지급까지 빼 버리고. 192쪽 수정의견 ‘제35조(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이것도 수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된 거네요. 지금 인력양성 지원 등에 대한 논의는 다 끝난 겁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93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진흥전문기관 설치 등입니다.

먼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안에서는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 또는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 등의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안은 반도체산업공급망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는 반도체산업협회나 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나누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설 필요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습니다.

19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우선은 수정의견에서는 반영은 하지 않았고 진흥센터 내지는 공급망센터의 지정 여부 근거 조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특별법의 목적을 고려해서 전담하는 진흥전문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반도체산업협회나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 공급망을 지원하는 소부장공급망센터 이런 것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또 하나 공급망 관련된 게 뭐가 있다 그러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소부장공급망센터라고……

○고동진 위원 소부장? 그것은 소부장에 관련된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반도체를 포함한 소부장공급망센터……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에 커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산업도 다 커버가 되는데 여기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산업기술평가원 중에 반도체 관련된 공급망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각 기관에 1개 정도씩 부서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산업협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민간단체 성격이고 산자부 산하에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원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공급망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지금 정부 의견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산업기술진흥원 안에 지금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내부의 기능을 키워서 하면 좋겠는데, 별도로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데 사정을 잘 모르니, 어차피 오늘 법안이 한 번은 더 숙성이 돼야 될 테니…… 현재 산업기술진흥원의 업무분장표가 있을 텐데 현행대로 그냥 거기서 할 게가 아니라 그 안에 반도체 분야에 인력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협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환 위원님 의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방금 나온 반도체산업협회는 민간협회라서 적절치 않다는 고동진 위원님 의견이 있으니까 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업무분장표를 보고 그것을, 아까 차관님이 한 과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본부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다시 의논하면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다음번에 산업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98쪽입니다.

수출 승인 등의 면제, 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 등의 대책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의 면제, 유출 및 침해 금지 등의 사항을 박수영 의원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언주·정진욱 의원안은 반도체산업 기술보호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은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돼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기술의 지정이나 변경·해제, 수출 승인, 침해행위 금지, 벌칙까지 포함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기술 보호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00쪽 조문대비표입니다.

박수영 의원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수출의 승인을 면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이철규 의원안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 실무 수정의견으로는 절차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반도체기술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반영은 하지 않았는데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첫 번째, 면제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처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첨단전략산업법에서 많은 기술 보호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제를 하기보다는 좀 더 간소화를 해서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정도로 첫 번째 33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기술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술 유출 관련된 것들의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종합대책 그다음에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보호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틀 내에서 추진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앞에 말씀드린 종합대책에서 다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도체기술의 유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유출 경로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20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기술 보호 종합대책 수립 여부는 수정안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원이**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고동진 위원** 기준에 첨단산업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법에 있다 이거지요?

○**고동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법에 따라 준용해서 한다, 그냥 다른 법에서 하면 된다, 이 법에서 굳이 만들 필요 없다 이 얘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지요?

○**고동진 위원** 아까 앞에 수출 승인 면제에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수출 승인 간소화가 타당하다 이것은 '국가안보' 이것 하나만 집어 넣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수정의견에는 국가안보나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정부안으로 여기 의견을 내놓은 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수정의견으로 동의했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수정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200페이지의 수정의견 33조 이 문항으로 지금 동의가……

○**고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국가안보가 빠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왜냐하면 이게 국가핵심기술이나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고동진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이 나갈 때에 뭔가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보다는 그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안이 수정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안대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다음번, 이제 보칙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203쪽, 보칙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204쪽으로 조문대비표 바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안의 38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그다음에 40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41조(과태료) 등은 법을 집행하는 데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정부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05쪽 부칙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 유효기간, 적용례,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6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서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6개월 또는 3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공포 후 6개월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유효기간이 김태년 의원안, 정진욱 의원안에 있는데 우선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는 이미 심사를 하시면서 기존에 설치가 완료됐거나 지금 설치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 3조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시행일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6개월 이후 공포로 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 유효기간은 반영하지 않고 이 법을 설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만약에 설치된다고 한다면 유효기간은 다른 유사한 특별회계를 준용해서 10년 정도로 설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근로시간 특례는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 부분은 아까……

○소위원장 김원이 아까 근로시간 논의는 안 하기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두 가지는 동의하고 근로시간 문제는 앞으로 더 추가 논의 하자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고동진 위원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말씀하십시오.

○고동진 위원 일단 제가……

○소위원장 김원이 특별회계 유효기간입니까, 아니면 법률 유효기간입니까?

○고동진 위원 특별회계, 그러니까 이 법률 유효기간. 현재로서는 한 10년으로 해 놓은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제가 몇 차례고 산자위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산업의 에코시스템을 튼튼하게 가져가고 소부장 기업, 중소·중견 그다음에 대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메모리는 더 잘하고 파운드리 같은, TSMC 같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짧아도 12년 13년, 늦어도 15년 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몇 차례 의견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고 아예 기한을 없애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바람이기는 하나 기한 없이 가지고 하는 게 정 문제가 된다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5년이라도 좀 늘려서 한 15년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특별회계?

○고동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어떤가요, 위원님들?

○김성환 위원 특별회계가 유효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게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대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종 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10년 정도씩 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시 연장될 겁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그때 되면 또 모르니까……

○김성환 위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고 위원님, 그때까지 제가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박형수 위원 그동안에 반도체산업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은 연장됩니다.

○김성환 위원 망하지 않는 한 연장됩니다.

○이재관 위원 소부장특별회계도 이번에 법 개정해서 또 연장하는……

○고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제가 그때까지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이것 꼭 쟁기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부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여기까지 다 산업부 의견으로 지금 조정이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다만 근로시간만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일별을 했습니다. 일별했고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조항은 의견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 있습니까?

○고동진 위원 아까 야당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는데, 정부 측 안에서도 일부 그랬고 직접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WTO, FTA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

는데 저는 우리 산자위에서 직접 보조금에 대한 것을 넣어도 법사위에서 누군가 또 태클을 걸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산자위에서는 ‘직접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놓고 산자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어떤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 조항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김성환 위원 지금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위원장 김원이 더 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오늘 결론 내기보다는 좀 더 숙려 기간을 갖고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위원장으로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법사위에서 조정된 것을 너무 당연시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상임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자구 수정 정도면 몰라도 법안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것을 법사위에 맡기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하여간 법사위에서 못 건들도록 우리가 최대한 좋은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동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마무리……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일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가 되거나 추가로 심사하기로 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문구를 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자고 의견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면……

○고동진 위원 오늘 당장?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요, 아니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기회에.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열면 안건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이것은 박성민 간사님이나 저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다음번 법안소위 할 때 우선적으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요, 아니요. 다음 주 화요일은 정해진 안건이 워낙 많아서 화요일 날 하기는 무리 아닙니까? 그때도 제정법안이……

○박형수 위원 다음 법안심사 할 때.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다음번 법안심사 할 때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제정법만 4개인가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환 위원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해서 법안소위를 또 열자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중기법안소위는 내일 한 차례인데 우리는 두 차례 아닙니까, 오늘하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두 차례인데 필요하면 고동진 위원님이나 박형수 위원님이 법안소위를 더 열자고 내용적으로 박성민 간사님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박형수 위원** 예산이 늘어질 거니까 그 안에만 한 번 더 하면 되지. 한번 봅시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요. 저는 하여간 법안소위를 더 자주 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고 찬성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김성환 위원** 지금 7번까지 한 거예요?

○**소위원장 김원이** 7항까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운진 심의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및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 법안을 내 주신 정진욱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화요일 날로 늦춰 주면 어떻겠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것도 보니까 사실 제정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정법이다 보니까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은 다음번 화요일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0항으로 넘어가야겠지요?

○**김성환 위원** 오늘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소위원장 김원이** 오늘 끝장 봐야지요, 오늘 올라온 법안은. 언제 또 넘깁니까, 이것을?

○**박형수 위원** 화요일 날로 미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럴까요? 그러면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 보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21항까지 이상 12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3권입니다.

2권은 다음 화요일에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3권의 1쪽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쪽부터 해서 3건의 심사 사항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산업기술의 범위 현행화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이 산업기술 정의 중에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조문 삭제는 법 개정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해양수산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 법에 해양수산기술이 있는데 현행법상의 산업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는 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위해서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원·이철규 의원안입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서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현재의 비상설 전문위원회 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안보센터의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은 4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 및 보유기관 등록 관련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내신 안입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의 확인은 산자부장관이 기업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기업 등에게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통해서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기술 보유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몰라서 또는 고의적으로 기술을 숨기고 있는 기업 등을 관리하고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정의견은 없고 법안의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몇 페이지까지 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8페이지까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안 제2조 같은 경우에 정부가 동의합니다. 전력기술은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해양기술은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연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쪽, 안 7조 6항 역시 산기평에다가 핵심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안보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어서.....

○**소위원장 김원이** 동의하면 짧게짧게 동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9조부터 9조의4까지의 내용 동의합니다. 역시 산업기술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18페이지까지 다 해당되므로 전체 다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9쪽입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의 심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안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의 신고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혼선을 줄이고 신고수리 이전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국가핵심기술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시에 즉시 산업부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이러한 핵심기술의 수출이나 유출을 적정 시기에 막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 혹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기술 수출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기술 보호 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 심사 시에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만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21쪽부터 있는 것을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고, 25쪽에 있는 사항의 수정 의견은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전문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병합된 내용 전체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방금 25페이지 수정의견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0쪽까지입니다. 그래서 31쪽……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부 의견에 동의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1쪽입니다.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이행강제금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김성원·구자근 의원입니다.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 하루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미이행 시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인 형사적 제재만이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의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과 같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2쪽부터 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만 김성원 의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모두 동의하고요. 수정 동의 사항은 13조인데 적정……

○소위원장 김원이 13조는 아직 안 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11조의3까지만 한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11조의3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13조는 아직 안 했습니다. 33페이지는 아직 안 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이요.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 33쪽.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3쪽,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개선 권고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연구개발사업 보호관리와 관련해서 개선 권고를 미이행한 경우에 필요 시 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서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정의견으로 그 내용 중에서 구자근 의원안은 개선 권고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34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에 산자부장관이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문에서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봐서 김성원 의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전문위원의 지적과 같이 김성원 안이 현실적으로 보이므로 수정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이요.

○**고동진 위원** 아니, 이게 핵심기술 보호조치 관련된 거고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그러는데 원상회복을 미이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재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정부 측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벌금이 적절한 겁니까, 첨단산업 관련된 미이행 건인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000만 원이고요.

○**박형수 위원** 1일 1000만 원이겠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보호조치에 관한 것은 1000만 원입니다, 과태료 1000만 원.

○**고동진 위원** 아, 눈이 안 보이는 게 한계로구먼. 1일 1000만 원, 그냥 1000만 원밖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1일 1000만 원, 좀 더 쓸까요?

○**고동진 위원** 아닙니다. 1일 1000만 원이면 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벌칙으로 하면 10억 원 이하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사실 10억 원도 적다, 첨단기술인데.

○**고동진 위원** 이것은 10억 원도 적은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요, 첨단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것 개발하는 데 수천억인데.

하여간 그것은 벌칙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까요?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하는 것이 그 횟수라든지 한도 그것을 정하는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의견은요?

○**고동진 위원** 이것 10억 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 벌칙이지요, 과태료가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벌칙 규정에서 논의할 수 있지요? 그것은 벌칙 규정 할 때……

○**고동진 위원** 예. 10년 이하 징역 이것은 무거워 보이는데 첨단기술 관련되고 국가안보 관련된 게 10억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박형수 위원** 분명히 ‘또는’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재관 위원** 뒤에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또는 징역이겠지요.

그러면 이 조항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6쪽입니다.

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기술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목적성 또는 고의성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3자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종류를 추가해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나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미신고·부정신고 후 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기술 유출 범죄 구성요건에서 고의성 또는 목적성을 제외하고 제3자의 고의·중과실 유출에 대해서 침해행위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8쪽 개정안의 내용들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두 번째 줄에 현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술 보유기관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고의 요건인 ‘알면서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바로 밑의 세 번째 칸에 있는 6-3호에 ‘기술 보유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목적 요건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쪽에 있는 조문대비표부터 보시면 이철규·박성훈 의원안에서는 그것 관련 내용은 없고 김성원 의원안에 있는데 그 내용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6쪽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유출 자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의 동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 박형수 위원 가만있어 봐. 수석전문위원님, 38페이지에 혼행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의견을 보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로 달라졌는데 앞엣것만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 유출, 사용, 공개, 제3자 전달 이 것은 빠졌네요?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이것은 기술 유출이고 목적 외로 사용, 공개, 제3자 전달은 빠졌네요?

○ 소위원장 김원이 2호 두 번째 줄 얘기하는 거지요?

○ 박형수 위원 예, 2호.

○ 고동진 위원 제3자 전달이 빠졌다고.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8쪽에 두 번째 2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설명이 약간 부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앞의 사항을 삭제하면 됩니다.

○박형수 위원 줄 쳐진 부분만, 목적 부분만 삭제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줄 쳐진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기술 유출, 사용, 공개, 제3자 전달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는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7쪽입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입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청구 시에 법원이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침해행위 물건의 폐기 또는 설비 제거 등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 침해행위로 제작된 물품의 시장 내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침해행위의 임시 구제방안으로 압류조치를 규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개정안의 금지 청구와 관련된 보전처분으로서 압류를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8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정부 측에서는 동의 곤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형수 위원 다른 법률에도 압류가 없는 모양이네요? 압류를 규정한 법률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예, 유사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똑같이 금지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고 압류라든지 이런 별도의 절차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법체계상 그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의견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요.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 판결이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최종 판결까지 꽤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보호조치하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박형수 위원** 그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민사법상의 가처분 같은 걸로 해결할 겁니다. 법원에 이것을 유통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게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아마 일반 민사법에 따라서 해결하자라는 취지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어떤가요, 그러면 산업부 의견 받아들이면 될까요?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말씀들을 좀 하세요.

○**이재관 위원** 확실하게 대안이 없으니까.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박형수 위원** 지쳤다니까.

○**고동진 위원** 반도체 특별법 때문에 지치지.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제정법 이렇게 쉽게 넘어간 것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신속하게 된 겁니다, 제정법.

○**고동진 위원** 이거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요, 아까 반도체법. 엄청 신속, 사회자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여기서……

(웃음)

농담이었고요.

49쪽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9쪽입니다.

산업기술 확인에 대한 간주 및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지정·고시·공고·인증 등 행정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확인서를 산자부장관의 산업기술확인서로 간주해서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상기관 등에게 산업기술의 보안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술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설치·운영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기술 유출의 방지 및 기업들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산업부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두 가지 사항 모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이요.

말씀이 없으므로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1쪽, 외국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한 적용입니다.

안철수 의원안 등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안은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동 규정의 적용이 범위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2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우선 안철수 의원안에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한민수·이철규 의원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전체적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동의하는 걸로 보고요.

다음.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민수·이철규 의원안으로 한다 그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53쪽, 침해신고 조사 및 조치 결과 공유, 침해신고 실태 조사 등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침해신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면서 산자부장관과 정보수사기 관의 장이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상호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구자근·안철수·박성훈 의원안의 침해신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산업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4쪽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에 대해서는 김성원 의원안과 같이 하고, 55쪽의 3항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국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17조의 경우에는 구자근·안철수 의원안에 있는 산자부장관이 침해신고가 있는,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우선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15조에서 국정원 예외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조 3항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 실태조사 이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아예 통으로 다 수용 곤란입니까?

○박형수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15조에서는 국정원 예외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15조는 국정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외를 인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동의, 나머지 항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만 17조는 동의 곤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동의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도 동의 곤란입니까, 삭제했는데? 삭제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수정의견이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해 줘야지요.

○박형수 위원 동의 곤란이니까 삭제가 맞지.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지금 수석 의견도 삭제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정리 안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7쪽입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의 국회 보고입니다.

안철수 의원안 등은 산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안철수 의원안에서 필요시 법무부장관에게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 횟수와 시정 방안 보고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8쪽의 조문대비표입니다.

한민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매년 2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매년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안철수 의원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7조의2제2항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기초·판결 현황 등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박형수 위원** 그 전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53페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 한 건데, 침해신고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앞에 15조에 보면 침해신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산업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이 서로 상호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수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항은 실태조사에 대한 거거든요. 그다음 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의 항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보기관하고 서로 통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17조의 실태조사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용어는 똑같이…… ‘침해신고 실태조사’, 위에도 ‘침해신고에 대한 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예, 침해신고에 대한 조사와 실태조사는 별도의 조항에서 다르게……

○**박형수 위원**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위원장 김원이** 실태조사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관에 대해서 조사는 없다는 거지요? 안 한다는 거고?

○**박형수 위원**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신고가 있을 때는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통보를 하고. 오케이, 알았어요.

○**소위원장 김원이** 쉽게 얘기하면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거고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님, 의견 풀렸으면 넘어가고요.

다음은 정부 의견 들을 차례였던가요? 60페이지 할 차례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60쪽 할 차례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고동진 의원안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고, 김동아 의원안은 배상액을 5배로 하면서 다만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동아 의원안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는 61쪽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그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2쪽입니다.

비밀유지의무자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근 의원안 등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 보유기관 등록, 개선 권고 등 신설되는 제도와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안은 비밀유지의무자가 산업기술 침해행위 협의를 정보수사기관 등에 제보 및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을 하는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자근 의원안의 핵심기술 보유 확인 등의 경우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안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은 법무부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임의적인 감면 규정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쪽의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으로는 65쪽의 안철수 의원안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김성원 의원안에 동의하고 안철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동의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7쪽, 임직원의 취업 제한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3년간 해외동종업체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으로 인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년 이상 근무한 자 전체에 대해서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68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동의 곤란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이요.

○ 박형수 위원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인 것 같아요.

○ 고동진 위원 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기업도 사실 그런 제한을 하는 거 아닌가?

○ 이재관 위원 일정한 제한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과도하다면 10년 이상 재직한 자라든지 7년 이상 재직한 자라든지……

○ 고동진 위원 우리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3년 정도 근무한 친구가 진짜 입사해서 3년 있다가 나갔어, 그런데 다른 데 취업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취업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 소위원장 김원이 하여간 이것은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라 이런 소리지요?

○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중요한 비밀이라 하면 3년의 비밀 협약 같은 걸 하겠지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보상들을 해 주지 않나요, 보통?

○ 박형수 위원 보상이 아니라 보통은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걸로 하지.

○ 고동진 위원 아니, 보통 세버런스 피(severance fee)라고 그래 가지고 어디 아직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몇 년을 못 하게 하지요.

○ 소위원장 김원이 고문이나 이런 거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 고동진 위원 예,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는.

○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은 민간기업과 본인 간의 계약으로 맡겨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성환 위원 맞겠네. 취업을 못 하게 막는 건 아니겠네.

○ 고동진 위원 이것을 하면 너무 취업 제한을 하기 때문에……

○ 소위원장 김원이 그리고 3년이면 그 업계가 다 짹 바뀌는 것 아니에요?

○ 고동진 위원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동의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이요.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9쪽입니다.

기술 유출 벌칙 강화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범에서 고의 범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의 사용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것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던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 14조에 있는 신설되는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해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미신고·부정신고 후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벌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해외유출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현행보다 더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 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안은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과 조금 다른데 우선은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이 벌칙에 대해서 강화하는 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한번 합의가 됐었습니다. 우리 산자위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사위까지 심사를 하다가 최종 본회의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합의된 내용을 우선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년에 65억이네요?

○**박형수 위원** 65억 원은 또 뭐야? 왜 또 5억이야, 65억?

○**김성환 위원** 5억이 왜 붙었어? 5 자가 왜 붙었어?

○**소위원장 김원이** 아, 초과하면? 이 뒤에가 더 있네요. 65억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이건가요? 아니구나, 이거는 안철수 안이구나.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정의견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김원이**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김성환 위원** 아니, 60억이면 60억이지 왜 65억이 붙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세한 논의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것 좀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 인상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미국에서 500만 불을 지금 벌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약 65억 원 정도로……

○**박형수 위원** 그걸 따 갖고 할 필요가 뭐 있노.

○**소위원장 김원이** 하여간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이렇게……

그런데 사실 너무 경미한 것 아니냐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이것 한번 넘기고 나서 수천억 투자했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고동진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김원이** 조금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해 보고 또 나중에 개정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동의해 줬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동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조항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6쪽입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에서 법원의 판결로 산업기술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10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기술유출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범죄자를 인지·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입하는데 산업기술침해범죄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조문대비표는 7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삭제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확 생각 같아서는……

○김성환 위원 민형배 의원님 안이 다……

○박형수 위원 너무 과하다.

○김성환 위원 너무 센가 본데?

○소위원장 김원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너무 소극적 아닙니까, 지금?

○김성환 위원 민형배 위원님한테 로비를 받은 게 없어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근데 이것 진짜 대로변에다 뭐 방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짓거리를 하다 걸리면?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마음이야 그렇지만……

○소위원장 김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는 것으로 해서 의결된 것으로 보고요.

다음 항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8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원·구자근·박성훈 의원안은 동일하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을 위한 판정 신청서류 미제출·허위제출 등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보유기관 등록 등등에 대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성원 의원안과 동일하다고 수정의견을 냈지만 구

자근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도 모두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마지막 81쪽, 부칙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 적용례 그다음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있습니다.

우선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적용례 같은 경우 산업기술의 침해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하고 비밀유지의무자 추가하는 등에 대해서는 적용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경과조치 관련해서도 법 개정 전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 기관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 8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2항부터 26항까지 산업집적활성화 관련한 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통상본부장님, 27번 안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법안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을 그냥 이어서 처리해 드리고 가시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히 또 22번부터 26번까지 기다리셔야 될 텐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떤가요?

○김성환 위원 27번까지만 하지요, 오늘.

○소위원장 김원이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화요일 날?

○김성환 위원 이어서 하면 되지.

○소위원장 김원이 다음 주에 제정법안만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그렇던데.

○김성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냥 하고…… 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하고 박형수 위원님이 한 번 더 잡아 주십시오. 저도 얘기할 텐데 박성민 간사님이 동의하면 우리 법안소위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박형수 위원 하여튼 일단 화요일까지 해 보고 합시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그러면 일단은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면 오늘은 본부장님 것까지만, 27항만 할까요? 그러면 22부터 26, 28번부터 35는 화요일로 넘긴다? 어때요, 김성환 위원님? 아니면 22번부터 26까지는 한다? 26까지만 하자?

박지혜 위원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므로 일단 27번 안건을 처리하고 22번부터 26번까지는 한번 밀고 가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가 봅시다.

○소위원장 김원이 나머지 법안들은 그렇게 어려운 법안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7항 안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심사자료 4권 24쪽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출연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고유사업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중의 하나로 명시해서 사업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산업·에너지 ODA 사업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IAT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출연기관이므로 개정안에 따라서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안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부터……

박지혜 위원님의 간절한 저 눈빛을 보십시오.

○박지혜 위원 간절하지는……

○소위원장 김원이 간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 통과 안 된다, 그러면. 통과 안 돼도 할 거예요?

○박지혜 위원 많으니까 이것만 하고 가시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원이 22항부터, 이게 뭐가 내용이 많은가요?

○고동진 위원 이게 박지혜 의원님 안이로구나.

○소위원장 김원이 예, 박지혜 의원님 안인데……

○박지혜 위원 앞으로 할 게 많으니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22부터 26까지 속도 있게 해 보시지요.

보니까 수정 동의, 동의 곤란…… 많네, 동의 곤란이.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쪽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입니다.

먼저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지혜·서왕진 의원안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또는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등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대해 산자부장관이 이를 권고하고 관리권자나 관리기관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또는 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박지혜 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만을 법률에 명시해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시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이 계획에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태양광 발전설비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등은 산업기반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아닌 구조고도화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정 조문의 위치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최근에 개정되어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법률에는 시·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참고

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대비표가 5쪽부터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관리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등 설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여기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구조고도화계획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고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지난 9월에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개정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350여 개 사업시행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굉장히 성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률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저는 일단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서 산업구조고도화계획에 일단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넣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어찌 보면 태양광이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넣자는 것이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위지침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에너지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규정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보다는 그래도 한 발짝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하자고 하신다면 거기까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 의견……

박지혜 위원님이 아주 전향적으로……

○**고동진 위원** 정부안은 태양광 여기만 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하자 그 의미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점은……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금 아직 법안이 다 처리가 안 됐는데 이참에 우리가 털 건 털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신’은 대체에너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대체에너지 안에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을 재생에너지로 소위 무늬만 얹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GCC고 연료전지도 그런데, 연료전지도 그런수소 연료전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일종의 재생에너지의 보조설비 개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규정으로 보면 LNG를 개질해서 쓰는 연료전지도 신에너지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추가하자고 하는 이유는 산업단지에 소위 화석연료를 줄이고 산업단지를 일종의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바꾸자고 하는 취지를 서왕진 위원이나 박지혜 위원님이 담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현행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표현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폐기물 에너지나 연료전지나, 이 수소도 어떤 수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몽땅 몰아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제가 김성환 위원님하고 박지혜 위원님이 이걸 발의하신 또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신·재생이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산단 태양광 중심으로 저희가 정책 계획도 발표했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담을 때는 뭔가 이게 기술중립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 신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신에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굳이 법에서까지 제약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성환 위원** 법 발의하신 의원님이 알아서 잘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차관님, 그냥 ‘신’ 빼고 재생에너지만 넣으면 어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신’을 넣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수소는 넣어야 돼, ‘신’ 들어가야지.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박지혜 위원님이 수용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그런데 좀 해 보고 정부의 의지도 있고 하니까요. 방금 차관님 약속 지켜 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은 산단을 구조화하는 문제, 고도화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정부 측도 저는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조항은 수정의견대로, 정부 측 안대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쪽, 입주기업체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서왕진 의원안은 입주기업체를 위한 관리기관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관리기관이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논의하신 것처럼 최근 개정된 시행예정법률의 내용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의 내용은 10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기존의 법이 9월에 개정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아까 박지혜 위원님이 앞단에서 논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미 기 법안에 수용됐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사실 1항은 지금 수용이 되어 있고……

○소위원장 김원이 하여간 동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게 수석전문위원 의견이고요 그걸 정부 측에서 받았으니 이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이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쪽,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서왕진 의원안은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급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미 개정된 내용에, 시행예정법률의 취지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14쪽의 조문대비표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담겨 있는데 공단의 사업목적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서왕진 의원안 6의2호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9월에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서 제44조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만 서왕진 위원님한테, 오늘 자리에 없어서 얘기를 못 듣고 있으니까 산업부에서는 특별하게 이 법안 논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6쪽입니다.

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입니다.

박성민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연접한 입주기업체의 연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설립·개시 신고 전이라도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고 정부 제출안은 여기에 추가로 38조의2에 따른 계약기간·가격 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8쪽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19쪽 상단에 있는 '설치하려는 때에 해당 산업용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려는 경우'로 일부 제한하고 있는 박성민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은 '설치하려는 경우'로 해서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만 박성민 의원께서 이것을 정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부안을 받아서 따라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정부안대로 추가적인 규정까지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요.

정부 측 안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의원안은 없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안으로 의견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제출안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이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부칙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6월이 있고 정부안은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공포 후 6월로 하고 있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6월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6개월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건 뭐예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단, 38조의3 개정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말씀하신 대로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고요. 38조의3에 대해서만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수석전문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왜 38조의3은 빨리해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현재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 중인데 이게 애로 사항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동진 위원 빨리하려고 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고동진 위원 빨리하려고 하면……

○박형수 위원 법안에 같은 조항에서 이렇게 뭐는 즉시 시행, 뭐는 6개월 후 시행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김성환 위원 있을 수 있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가 요구하면, 이것 큰 의미 없으면……

○고동진 위원 업체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원이 업체들 의견을 받았다고 하니까……

○김성환 위원 대세에 지장 없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6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따라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제28항부터 제35항 까지 법률안은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택 제1차관 및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

### ○출석 위원(12인)

고동진 김동아 김성환 김원이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이재관 정진욱  
주호영 허성무

### ○출장 위원(1인)

강승규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성택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정책관 강감찬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중견기업정책관 박덕열

통상협력국장 김종철

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이현조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